국회토론회

농민의 권리와 유엔 농민권리선언

일 시 : 2018. 10. 29.(월) 13:30-16:0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주관 : 충남연구원, 한국농정신문
- 주최 :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송영길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오영훈 국회의원, 비아캄페시나 KOREA(전농, 전여농)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 후원 : 한국농어촌공사

목 차

□ 인사말

O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 4 쪽
O 위성곤 국회의원	■ 6 쪽
O 오영훈 국회의원	8쪽
○ 윤 황 충남연구원장	10 쪽

🗌 주제발표

○ 주제발표1: 농민의 권리와 유엔 농민권리선언	13 쪽
김정열 비아캄페시나 동남동아시아 국제조정위원	
O 주제발표2: 농민인권 논의와 실태 : 충남도의 사례	23 쪽
박경철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책임연구원	

🗌 토론

0	이무진 전농 광주전남연맹 정책위원장	57 쪽	ì
0	정은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인권경영 전문가	63 쟠	<u>5</u> 1
0	외교부 인권사회과		
0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통상과		

□ 참고자료 ▶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제302호 이슈보고서 - 유엔 농민 농촌노동자 권리 선언(번역본, 원본)

회 순

□ 개회식 13:30-14:00

국민의례

내빈소개

개회사

□ 주제발표 14:00-14:40

좌장: 윤병선 건국대학교 교수

• 주제발표1: 농민의 권리와 유엔 농민권리선언
 · 김정열 비아캄페시나 동남동아시아 국제조정위원

• 주제발표2: 농민인권 논의와 실태 : 충남도의 사례
 박경철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책임연구원

□ **지정토론** 14:40-15:20

- O 이무진 전농 광주전남연맹 정책위원장
- 정은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인권경영 전문가
- 〇 외교부 인권사회과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통상과

□ **청중토론** 15:20-16:00

🗌 폐회

<인사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황주홍**

안녕하십니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황주홍입니다.

지난 9월 28일은 의미가 깊은 날입니다. 바로 제네바에서 열린 제39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유엔선언'(유엔 농민권리선언) 결의안이 통 과됐기 때문입니다. 유엔총회를 통해 회원국들의 투표를 거쳐 채택되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이 는 17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비아캄페시나가 꾸준히 노력해온 성과입니다.

오늘 국회토론회는 유엔 농민권리선언의 의미를 공론화하고 여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 되었습니다. 토론회에 기꺼이 참석해주신 윤병선 건국대 교수님을 비롯한 발표자와 토론자 여 러분, 농정신문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함께 공동주최해 주신 송영길 의원님과 위성곤 의원님, 오영훈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유엔 농민권리선언이 유엔총회에서 통과된다면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먹거리, 농 업, 종자, 토지에 관한 정의를 실현하고, 이들에게 유익한 국가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도구로 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농촌에서 소외된 여성, 청년, 이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2017년에 이어 "결의안을 전반적으로 지지하나, 일부 조항이 국내법 및 국제적 의무와 상충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오늘 토론회는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함께 정부와 각계의 입장을 모으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농민의 권리가 신장되는 역사적 계 기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국회의원 **위성**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주 서귀포출신 위성곤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농민의 권리와 유엔 농민권리선언"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농민 여러 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국 각지에서 농민여러분들이 추수철임에도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특히 올여름은 유 난히 더웠습니다. 국민 먹거리 생산을 위해 헌신해 주신 농민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아울러 의미 있는 토론회를 함께 마련해 주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님, 송영길 의원님, 오영훈 의원님, 비아캄페시나 KOREA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 다. 또한 오늘 행사를 주관하여 주신 한국농정신문과 충남연구원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 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농민은 국민경제발전과 식량공급에 크게 기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UN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에 특별한 관심과 보호를 위해 아동, 여성, 원주민 등 여러 권리선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8일에는 농민의 권리 를 규정한 유엔 농민권리선언이 17년의 긴 논의 끝에 유엔 인권이사회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 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UN인권이사회 논의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기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에 서 농민권리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정부와 각계의 입장을 나누고 협의함으로써 농민들이 처한 현실과 현장의 목 소리를 알리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 전문가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이 토론회가 우 리 농민의 권리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난제를 지혜롭게 푸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바랍니 다.

저 역시 오늘 토론회에서 농민의 인권을 위한 올바른 정책들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나라 농업과 농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참석하신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영훈**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을 국회의원 오영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농민의 권리와 유엔 농민권리선언'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농민의 권리·소득개선과 농촌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 산위원회 위원장 황주홍 의원님, 송영길 의원님, 위성곤 의원님과 심증식 한국농정신문 편집 국장님, 윤황 충남연구원장님 그리고 비아캄페시나 KOREA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국의 농업은 생활의 근간으로서 장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농민들이 힘들지 않았던 적 이 없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록적인 볕으로 인한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해 더욱 힘든 한 해였 습니다.

대한민국 농민이 생존의 기로에 놓이게 되어도 우리가 앞으로 가야할 길은 분명합니다. 농민의 소득이 도시근로자에 버금가는 길, 농민이 농민답게 사는 길, 사람이 살고 있는 농 촌을 만드는 길,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길, 선진국과 경쟁해도 이길 수 있는 농 업경쟁력을 만드는 길이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하고 지향해야 하는 길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산업으로서의 농업, 농민다운 농민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이 시점에 한국 농정의

<인사말>

현실진단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농민과 농업노동자의 권리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 달 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농민권리선언문'을 채택하 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내·외적으로 상충되는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분명한 태도 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토론회를 개최해 농민들과 정부의 입장을 듣고, 대한민국의 농정이 어 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견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토론회가 농민의 권리신장과 국제적인 농업경쟁력을 가진 대한민국 농업이 발전하는 초석이 되길 바라며, 농민과 정부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안이 마련되는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 역시 농민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으로서 농민 권리 신장 과 한국 농정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데, 두 팔을 걷겠습니다.

다시 한 번, '농민의 권리와 유엔 농민권리선언'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 사합니다. <인사말>



윤황 충남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충남연구원장 윤황입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에 저희 연구원과 한국농정신문이 함께 주관하는 "농민의 권리와 유엔 농민 권리선언"에 관한 토론회를 이곳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 다.

그리고 오늘 뜻깊은 자리를 함께 마련해 주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 장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 국회 농해수위 오영훈 의원님, 비아캄페시나 한국 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시기에 도 불구하고 농민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우리 농촌은 수확철을 맞이하여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넓은 들판의 황금빛 물결을 바라보면 평화라는 단어가 절로 나옵니다. 평화도 결국 먹거리가 충분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우 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전례 없는 폭염과 가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 던 농민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은 결코 평화롭지 않다는 게 사실입니다.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서 는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는 갈 수록 확대되어 농촌 인구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올해 쌀값이 급등한다고 하 지만 농민들은 현재 쌀값이 너무 낮아 쌀목표가격 인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농업과 농민은 그동안 산업화, 도시화, 개방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어 심 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정구조 개선, 농가소득보전, 도농균형발전, 농업선 진화, 농촌융복합사업 등을 통해 잘 사는 농촌을 표방했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 농촌은 현재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역사적으로 누적된 농민의 불평등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개 선하기 위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2014년에 수립된 〈충남도 인권증진 기본계 획〉에 농어민 인권증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2014년 10월에 선포된 〈충남도민 인권선언〉에도 농어민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후 저희 연구원에서도 농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오늘 주제 발제자인 박경철 박사가 지난해에 수행한 "충남도 농민인권 실태 및 정책 과제"가 바로 이 러한 연구입니다. 박경철 박사는 이 연구에서 충남도 농민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농민인권 증진 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지난 9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마련된 <농민권리선언>이 유엔 총회에 상정됐다는 반가운 소식 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농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농민들에게 축하와 함께 경의를 보냅니다. 그동안 전세계적으로 진행된 신자유주의의 광풍에서 빼앗긴 농민의 인권과 관리가 유엔과 각 국가 차원에서 보장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충남도와 충남연구원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뜻깊은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한국농정신문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그리고 바쁜 수확철에도 농민의 권리를 찾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신 농민 분들과 농 민의 권리 보장에 뜻을 함께 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01

[주제발표1]

『농민의 권리와 유엔 농민권리선언』

김 정 열

비아캄페시나 동남동아시아 국제조정위원

농민의 권리와 유엔 농민권리선언

김정열 비아캄페시나 동남동아시아 국제조정위원

- ☞ 국가는 농민 농촌노동자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 및 정책, 국제 협정 및 기타 의사 결정 과정을 채택하고 시행하기 전에, 국가는 이러한 의사 결정이 이뤄지 기 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농민 농촌노동자와 관계를 맺고, 이들의 지지를 받으 며, 이들의 의견에 대응하고, 행위자 간 존재하는 권력 불균형을 고려하며, 관련 의 사 결정에 대해 개인과 단체의 능동적이고 자유로우며 효과적이고 유의미하며 정보 가 사전에 잘 고지된 참여를 보장하는 농민 농촌노동자의 자체적인 대표기구를 통해 농민 농촌노동자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협력해야 한다. (2조 국가의 일반적 의무 3 항)
- ☞ 국가는 국가 규제 대상이 되는 개인과 민간단체, 초국적 기업과 기타 사업체 같은 비국가 행위자들이 농민 농촌노동자의 권리 향유를 무효화 하거나 손상하는 것을 방 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2조 국가의 일반적 의무 5항)
- 농민 농촌노동자는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기타 모든 국제 인권법에 인정 된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누릴 권리를 가지며, 출신, 민족, 인종, 피 부색, 혈통, 성별, 언어, 혼인 여부, 재산, 장애, 나이, 정치적 또는 다른 견해, 종 교, 출생 또는 경제적, 사회적, 기타 지위로 인해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어떠 한 차별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3조 평등 차별금지 발전권 1항)
- 국가는 여성 농민 농촌노동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근절시키고 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동원해야 하며, 이를 통해 남녀평등의 원칙에 근거 해, 여성 농민 농촌노동자가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누리 며, 농촌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하고 참가하여 혜택을 누 릴 수 있어야 한다. (4조 여성농민 농촌노동자의 권리 1항)
- 국가는 적절한 수단을 취해 로컬·국내·지역시장(들)을 강화하고 지원해야 하는데, 농민 농촌노동자는 이러한 시장(들)에 완전하고 공평하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 록 보장해야 하며, 그것을 통해 자신을 비롯한 가족들이 적절한 생활 수준을 달성하 게 하는 가격으로 그들의 생산품을 팔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6조 적절한 수입과 생계 생산수단에 대한 권리 3항)

** 농가가 저장한 종자나 번식시킨 것을 저장·사용·교환·판매할 권리.
 ** 농민 농촌노동자는 자신들이 소유한 종자와 전통 지식을 유지·관리·보존·개발할 권리를 가진다. (19조 종자에 대한 권리)

이런 선언문이 곧 유엔의 선언문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이는 국내외적인 법과 제도 속에서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새롭게 다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48년 유엔 「세계인권선언」이 그랬듯이 말이다.

농산물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져도 어떤 대책도 내 놓지 않는 정부, 도시민들과의 소득격차 가 60% 이하로 떨어져도 어떤 대책도 내 놓지 않는 정부. 이런 나라에서 사는 농민으로서 농 민의 권리를 담은 「농민과 농촌노동자 권리 선언문」(Declaration on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채택 결의안 소식은 참으로 가슴 벅차다. 더 이상 내몰릴 곳조차 없는 농민으로서 한 가닥 줄이라도 잡은 심정이다. 그러나 그 줄을 희망의 줄 로 만들기 위해서는 농민들과 농민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끈질긴 노력이 있어야 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기도 하다.

한편 인권국가라 칭하는 한국정부는 이 선언문 채택에 찬성을 하지 않고 있다. 9.28일 제네 바에서 열렸던 39차 이사회 표결에서도 기권 입장으로 표결에 참여했다. 무슨 까닭일까? 국제 적으로 중요한 이슈일 뿐만 아니라 한국농민의 권리신장에 있어서 중요한 의제임에도 불구하 고 국내에 알리지도 않고 당사자인 농민들과 대화조차 없으니 무슨 까닭에 찬성을 하지 않는 지조차 알 수 없다.

1. 농민권리 선언은 어디까지 와 있나?

지난 2018년 9월 28일 제 39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47개국의 인권이사국 중 33개 국가의 찬 성, 11개 국가의 기권, 3개 국가의 반대로 농민과 농촌노동자의 권리 선언문(이하 농민권리선 언문)이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되었다. 긴 시간에 걸친 농민과 농촌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노력 과 활동이 드디어 결실을 거둔 것이다.

찬성(33)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브룬디, 칠레, 중국, 코트디브아르, 쿠바, 콩고 민주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라크, 케냐, 키르기스스 탄, 멕시코, 몽고, 네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파나마, 페루, 필리 핀, 카타르, 르완다,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남아프리카, 스위스, 토고, 튀니지,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베네수엘라
반대(3)	호주, 헝가리, 영국
기권(11)	벨기에, 브라질, 크로아티아, 그루지아, 독일, 아이슬란드, 일본, 대한민국,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39차 유엔 인권이사회 농민 농촌노동자 권리 선언 결의안 표결 결과>

이로써 이후 남은 과정은 10.25일부터 3주간 예정으로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인권위원 회에서 "우리는 이 선언을 채택할 것을 결의한다."라는 결의안이 올라가면 12월 18일 열리 는 총회에서 승인되는 절차만 남아 있다.

각각의 이해관계가 다른 193개국의 투표가 남아있고 제네바와 뉴욕의 정치적 환경이 다름을 감안할 때 아직도 어려운 과정이 남아 있지만 이 선언문 채택을 주도해온 비아캄페시나(Via Campesina)에서는 승인까지의 과정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민과 농촌노동자의 권리 보장은 몇 개 국가가 반대한다고 해도 지속가능한 먹거리,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거스를 수 없을 만큼 진전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2007년에 채택된 「유엔원주민선언」의 사 례처럼 채택 과정이 1년 정도 연기될 수 있다고는 보고 있다.

2. 선언문은 왜 필요한가?

왜 농민권리선언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이 선언문의 서문에 잘 나와 있다.

"농민과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전 세계인류발전과 생물다양성 보존 및 증진을 위해 공헌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농민과 농촌노동자가 빈곤, 기아, 영양실조, 기후변화로 고통 받고 있고, 매년 땅과 공동체에서 강제로 추방당하는 숫자가 늘어나며 농민과 농촌노동자가 의존해 왔던 천연자원 및 자원자원의 지속적 이용이 어려워지며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행사마저 거부 당하고 있으며 농민과 농촌지역민이 위험한 착취조건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선언문을 제정하 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 현재 농민, 여성농민, 청년, 아동과 농촌에서 사는 노동자, 어민, 원주민, 목축인 등 많은 사람들이 차별과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더 이상 인간다운 삶조차 불가능한 지경에 이 르렀음을 인정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농민과 농촌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더 강화하고, 자연 적인 과정과 순환을 통해 적응 및 재생하는 생태계의 생태자연적 능력을 존중하는 것을 비롯 하여 많은 국가 및 지역에서 어머니 대지로 언급되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자연을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방식을 실천하고 촉진하려는 농민 농촌노동자의 노력"을 지지하기 위해 유엔은 이 선언문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3. 현재까지의 과정

이 선언문은 국제농민운동조직인 비아캄페시나(Via Campesina)에서 2000년부터 제안하고 18 년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다. 비아캄페시나는 1993년 창립되었고 현재 82개국 181개 조직이 가입되어 있는 강력한 농민운동조직이며 국제농민단체로서의 위상을 인정받아 유엔농업기구인 FAO와 함께 농업개혁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이경해 열사가 돌아가셨던 2003년 멕시 코 칸쿤 WTO각료회의 저지투쟁, 2005년 홍콩 WTO각료회의 저지투쟁을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전 국제적인 캠페인으로 확산시키기도 하였다.

농민권리 선언은 2000년부터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자본에 빼앗긴 농민의 권리를 찾기 위해 국제사회 법과 제도 공공정책으로써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활동이 농민에게 유용한 도 구임을 인식하고 도전하기 시작했다. 유엔의 선언문이 국제조약처럼 각 국가 내에서 강제적인 법으로써 집행의 의무는 없지만 1948년에 제정된 「세계인권선언」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확고히 하는 각 국가의 기본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처럼 국가의 헌법 및 법체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지지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시민사회진영, 연구조직, 볼리비아 등 이를 지지하는 정부들과 함께 18년이라는 긴 시간을 끈질기게 투쟁해 왔다.

이 운동의 시작은 2001년 비아캄페시나 인도네시아 농민조직인 SPI에서 부터 시작되었으며 2002년부터 비아캄페시나 국제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WTO로 대변되던 신자유주 의에 맞선 "농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투쟁의 도구"로써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2003년부터 유엔인권이사회와 접촉을 시작했으며 2007~8년 식량위기 이후 식량의 굶주림에 대 한 해결이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올랐고 식량과 농민, 식량의 위기와 농업 농촌의 문제가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농업의 문제와 농민의 문제를 도외시 하고는 식량의 문제 뿐 아니라 굶주림과 기후의 문제, 생태적인 문제 등의 지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하면서 유엔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드디어 유엔총회로 올라가게 된 것이다.

 2009. 3월 (서울) 국제조정위원회 회의에서 '비아캄페시나의 농민권리선언문' 채택
 2009. 4월 UN 인권이사회에서 "농민의 권리와 관련된 연구를 시작하자"는 제안 제출
 2010. 선언문 프로젝트가 UN인권이사회의 자문위원회에 의해 이사회에 제출됨. 이후 이사회의 요청으로 농민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 수행, 자문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 "농민권리는 조직적으로 침해당하고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 국제법 문서가 마련되 어야 한다."는 결론이 제출되었고 이와 더불어 비아캄페시나에서 작성한 농리권리선 언문이 첨부되어 제출됨.

- ₽ 2012. UN인권이사회에서 '조사 보고서 및 그 결론'을 채택하고 UN선언문을 마련하기 위한 초안 작성을 위한 개방형 정부 간 워킹그룹을 구성함.
- 2013, 2015, 2016, 2017 2018년 5차례의 개방형 정부 간 워킹그룹 협상 세션에서 선언 문 초안 검토와 논의, 표결, 수정 작업이 이루어짐.
- ₽ 2018년 9월 28일 39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수정 제출된 선언문을 채택함.

<농민 농촌노동자 권리 선언 논의 진행 과정>

4. 선언문의 구성 및 내용

선언문은 농민과 농촌지역민의 인권, 식량주권에 대한 권리, 토지·물·종자·생물다양성· 전통지식 대한 농민의 권리, 발전권, 사법권 등을 담고 있다. 서문을 비롯하여 총 28개 조항 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문 제1조. 농민과 농촌노동자의 정의 제2조. 국가의 일반적 의무 제3조. 평등, 차별금지, 발전에 대한 권리 제4조. 여성 농민과 농촌 노동자의 권리 제5조.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 제6조. 개인의 생명,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제7조. 이동의 자유 제8조. 사상, 의견, 표현의 자유 제9조. 결사의 자유 제10조. 참여의 권리 제11조. 생산, 마케팅, 유통 관련 정보에 대한 권리 제12조. 사법 접근권 제13조. 노동권 제14조, 일터에서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권리 제15조. 적절한 먹거리에 대한 권리 제16조. 적절한 수입과 생계, 생산수단에 대한 권리 제17조. 토지와 기타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 제18조. 안전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제19조. 종자에 대한 권리 제20조. 생물다양성에 대한 권리 제21조.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제22조.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제23조. 모두가 최대 수준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 제24조.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제25조. 교육과 훈련에 대한 권리 제26조. 문화적 권리와 전통지식 제27조. 유엔 및 국제기구의 책임 제28조. 일반사항

<농민 농촌노동자 권리 선언 구성>

구성과 제목에서 보듯이 존엄하고 자유로우며 평등한 인권으로서의 기본권 뿐 만 아니라 천 연자원, 자연자원에 대한 권리, 식량주권에 대한 권리, 종자, 토지에 대한 농민의 권리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차별받고 소외받는 아동, 청년, 여성의 권리까지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5. 농민권리 선언문의 의의

비아캄페시나는 공식적으로 이 선언문의 의의를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 농민들의 권리를 한층 더 지켜주고, 농촌 생활을 개선함.

- ₩ 식량주권, 기후변화와의 싸움, 생물다양성 보호를 강화함.
- 포괄적인 농업개혁을 실행하고, 토지수탈(land-grabbing)로부터 보호할 수 있 는 조치를 취함.
- ✤ 농민들이 종자를 보존하고, 사용하고, 교환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 시킴.
- ✤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이 적절한 가격을 보장받고, 농업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 장하도록 함.
- 여성농민의 권리를 인정하고, 출신지, 국적, 인종, 피부색, 혈통과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사회 정의를 보장함. 성별, 언어, 문화, 결혼여부, 재산, 장애, 나이, 정치 및 여타 견해, 종교, 출생이나 경제, 사회 또는 다른 지위로 인해 차별 받지 않음.

다른 측면에서 이 선언문의 의의를 살펴보면 첫째, 최종 수정문에 축소되게 쓰여 지기는 했 지만 역사적으로, 운동적으로, 철학적으로 중요한 개념들이 국제 사회에 공식적으로 쓰였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농민을 지칭하는 공식단어로 'peasants' 라는 단어를 쓰면서 농민이 갖 고 있는 계급성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peasants'는 땅에 대한 특별한 애착관계에 있다는 점을 밝혔다. 그럼으로써 농민이 하나의 경제집단의 의미를 뛰어넘는 역사적 존재임을 공식화 했다. 'people'이나 'collective Rights' 같은 단어는 농민과 농촌노동자들, 농촌에서 사 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집단적, 공동체적 권리를 밝혔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권리 또한 개인적인 권리를 넘어선 집단적 공동체적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비아캄페시나의 근본 이념으로써 20년 동안 주장해 왔던 'food sovereignty' (식량주권)도 이 선언문에 넣음으로 써 국제사회에서 농민의 권리로 당당히 인정받게 되었다.

또 'Mother Earth' 라는 철학적이고 영성적인 의미까지 국제선언문에 넣음으로써 지구와 인 간, 인간과 땅, 지구 생태계 속에서 농민과 농촌이 갖는 지위와 역할, 중요성으로의 관점까지 확장 시킬 수 있는 선언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자본과 투기의 대상 만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후 국제규범 속에서 어떻게 뻗어 나갈지 기대가 된다.

이 단어들은 사실 매번 실무그룹회의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고 이 단어들을 삭제 하느냐 마느냐로 각 국가 대표들과 비아캄페시나를 비롯한 NGO참가자들 간의 장시간 격론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왜냐하면 이런 단어들은 철자의 나열이 아니라 개념, 가치관, 관점, 사 상, 지향점까지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농민권리선언문은 인류 역사를 진보시 키는 한 획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두 번째는 현재의 국제인권법으로도 포괄하지 못 하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며 이들의 인권을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는 측면이다. 인 권의 역사는 소수 기득권 남성의 권리로부터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 권리를 신장시켜 나가는 투쟁의 역사였다. 소수자, 사회적 약자, 법적인 권리조차 획득하지 못하고 차별과 부당한 대 우를 받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이 선언문은 의미가 크다. 농민과 농촌노 동자, 이주민 등은 자신의 권리를 찾는 과정에서 범법자로 구속되기도 하고 심지어 살해당하 기도 했다. 이 선언문은 모든 인간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개발에 참여하고 기여하고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발전권과 이를 통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진보적인 인권의 역사를 쓰고 있다.

6.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1) 종자와 토지는 본래 농민의 것이었다. 물과 천연자원 역시 인류 모두의 것이었다. 그러 나 신자유주의 농업 시스템은 그것들을 개인의 것으로 만들었고 기업의 것으로 만들어 버렸 다. 그럼으로써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들의 삶과 공동체는 파괴되었고 인류의 안전한 먹거리, 어머니 지구는 황폐해져갔다. 이들에게서 농민들의 권리를 찾아오는 것이 지구를 살리고 생명 을 살리는 길이다.

우리는 이 선언문을 국내로 가져와서 한국농민과 한국농업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렛대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농민의 권리를 헌법에 보장하는 보장 하는 문제, 농민의 생계와 식 량주권을 위해 농민수당 등 법과 제도를 만드는 문제, 종자를 둘러싼 종자법 문제, 토지문제, 여성농민과 청년들의 권리 문제 등 국내 이슈들과 밀접한 논의를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농민 권리 선언을 국제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헨리 사라기 인도 네시아농민연합(SPI) 의장은 이 선언을 통해서 각 국가의 소농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 가?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뉴욕 총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면, 우리는 선언문의 메시지를 다시 자국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이며, 그 의미를 보다 정제하여 민영화, 범죄화 등에 반대하는 우리의 투쟁을 강화할 방법을 고민할 것이다. 더 많은 국민들에게 이를 알리고 교육시킬 때 우리의 운동은 더욱 더 강해진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개도국의 농촌 현실을 고려한 더 나은 정책과 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정부의 입장을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도 필요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최종 기권 의사 를 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공식입장을 유엔에 발표하였다.

"대한민국은 농촌에 사는 사람들의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며, 이러한 목표와 관련하여 발전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결의안 을 전반적으로 지지하나, 일부 조항이 국내법 및 국제적 의무와 상충할 수 있기에

기권을 표하는 바이다."

이 입장은 농민의 생존권이 자본과 시장에 의해 구조적으로 침탈당하고 있으며 농민의 권 리가 제도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농촌을 살리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지구, 지속가능한 미 래가 없음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언문이 대다수 국가의 지지 로 채택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국제법과 국내법의 상충 때문에 지지 할 수가 없다.'는 것 은 한국정부가 농민보다는 기업과 자본의 편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는 것일 뿐이다. 현재 존재하는 국내법으로는 농민의 삶과 농민의 권리, 지속가능한 농업과 먹거리를 보장하지 못하 는 현실을 왜 고백하지 않는가?

정부는 비공식적 입장으로 '농가가 저장한 종자나 번식시킨 것을 판매할 권리', '이주 민 노동자에 대한 권리' 부분을 가지고 "국내법과 상충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잘 못된 해석이다. 이미 우리나라가 2009년에 가입한 국제식물유전자원조약(ITPGRFA) 9조에도 종 자에 대한 농민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농민이 종자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는 이미 국제조 약에서 확인된 권리인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주노동자의 권리 또한 인권의 측면에서 계속 변화 발전시키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지 현재의 법만을 고집하면서 그들의 인권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결국 당사자 들의 관심과 노력, 인권국가 대한민국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몫이 남았다.

(3) 대한민국 정부가 찬성을 하던 안 하던 유엔에서 농민 권리선언문은 결국 채택될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아직도 늦지 않았다. 이와 관련된 공식 협의체를 만들어 국제 정세와 국제규범, 국제질서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02

[주제발표2]

『농민인권 논의와 실태: 충남도의 사례』

박경철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책임연구원

농민인권 논의와 실태 분석: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박경철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I.서 론

우리나라 농민은 그동안 정부 주도로 추진된 과도한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정치 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되어 농민으로서의 권한과 권리가 심각하게 침 해당해 왔다. 오랜 시간동안 농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농업, 농촌, 농민에 투자를 해왔던 서구 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이러한 농민에 대한 생존권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과도하게 추진된 농 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해 농민의 삶은 빠르게 붕괴됐다. 특히, 1993년 UR 농산물개방 협상 타 결 이후 농산물시장의 무분별한 개방으로 농산물가격의 하락되었고 도농 간 소득격차도 심화 되어 결국 농민의 삶의 질도 심각하게 저하되어 왔다.

농민의 생존권 붕괴는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 특히 개도국에서 심각하 게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국제적 연대의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농민의 생존 권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WTO체제 하에서 미국 등 농업선진국의 농업통상 개방 압력이 심화 되고 농업생산수단(종자, 농약, 농기계, 기타 농부자재 등)에 대한 다국적기업의 독점이 심화 되고 있는 상태에서 각국에서는 농업생산의 효율화를 위한 단작화, 기계화, 규모화 추진으로 중소영세농의 생존권이 심각한 위험에 처하자 각국의 중소영세농들은 현재 자신의 생명과 권 리를 지키기 위한 결사체를 조직하고 국제적인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활동단체가 국제적 소농연대조직인 '비아 캄페시나'(농민의 길: La Via Campesina)이다. 이 단체는 2008년 자본의 세계화에 맞서 농촌의 소농, 특히, 개도국 농민의 생존권과 인간답게 살 권리를 요구하는 <농민권리선언>(Declaration of Rights of Peasants -Women and Men)을 발표(La Via Campesina, 2009)하고 이를 유엔 차원에서 채택해 줄 것을 요 구했다.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는 2012년 2월 69개국 148개 조직이 모인 비아 캄페시나의 이러한 요구가 타당하다고 받아들여 그것을 채택했다.

이후 유엔인권이사회는 비아 캄페시나의 <농민권리선언>을 토대로 유엔인권이사회 차원의 <농민권리선언>을 채택하기 위해 실무그룹을 꾸려 2013년 <농민권리선언>(정식명칭: 농민과 농촌지역에서 일하는 여타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선언: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결의안을 마련하고 최종 채택을 준비 중 에 있다. 현재 미국은 이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유럽의 농업 선진국은 기권상태에 있다. 하지만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많은 중소영세농의 권익을 주장하는 농민단체가 이 결의안에 대해 적극 찬성하고 있다. 또한 이미 "인류가족 모두의 존엄성과 양 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다"로 시작되는 <세계인 권선언문>1)을 선포한 유엔에서도 <농민권리선언> 채택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조만간 UN총회에서 이 결의안은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¹⁾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프랑스 파리의 팔레드 샤이요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선포되었다.

그동안 충남도는 도민의 인권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14년 10월 13일 <충남도 민 인권선언>을 선포하고 도민 누구나 존엄하고 자유로우며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 음을 천명했다. <충남도민 인권선언>은 그동안 지자체 인권선언이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등 대도시 위주에서 도 단위 인권선언으로는 처음이라는 데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그동 안 인권선언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농어민의 권리'를 처음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첫째, 비아 캄페시나와 유엔 인권이사회 등에서의 농민인권 논의 배경 및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다. 국제 소농연대조직인 비아 캄페시나는 세계화에 맞서 2001년부터 농민의 권리를 주장 하고 구체적인 권리안을 마련해 유엔 차원의 논의를 제기해왔다.

둘째,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유엔 <농민권리선언> 결의안의 핵심 쟁점사항에 관한 분석이다. 이 결의안은 단순히 농민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토지, 환경, 종자 등 물질적 권리까지 규 정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엔 <농민권리선언> 결의안 논의의 핵 심 쟁점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쟁점과 논의내용을 분석한다.

셋째, 이러한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충남도 농민인권의 실태를 파악하고 농민인권 증진을 위한 요구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유엔 <농민권리선언> 결의안의 내용을 토대로 현재 충남도 농민인권의 실태를 심층적으로 조사·분석하고 농민인권의 증진을 위한 구체적 요구가 무엇인 지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충남도 농민인권 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과제의 제시이다. 농민인권의 범위 가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중요한 농민권리가 무엇이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Ⅱ. 농민인권 논의 배경과 경과

1. 농민인권 논의 배경

이른바 <농민권리선언>2)을 처음 제기한 단체는 '비아 캄페시나' (Via Campesina)이다. 이 조직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사회운동조직 중의 하나인 소농연대조직이다. 전 세계 69개국, 140 개 농민단체, 약 2억 명의 소농들이 참여하고 있다. 세계무역조직인 WTO가 설립되기 두 해 전 인 1993년, 비아 캄페시나는 전 세계적으로 생명, 토지, 소농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설립되 었다. 세계자유무역체계 하에서 자국의 식량 주권(food sovereignty)을 지켜내는 것이 이들의 주된 관심사항이다.(아네트 아울레리 데스마레이즈, 박신규 등 옮김, 2011; Golay, 2013)

비아 캄페시나는 그동안 세계 각국, 특히 세계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도국 소농들의 가난과 기아, 그리고 심각한 고통과 차별에 맞서 소농의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활동 을 전개했다. 갈수록 악화되는 농민인권 침해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유엔 차원 의 <농민권리선언>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비아 캄페시나는 2001년부터 <농민권리선언>을

²⁾ 비아 캄페시나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제시한 <농민권리선언>을 필자가 처음에는 <농민인권선언>으로 번역을 했으나 이후 관 련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농민권리선언>으로 통일했다. 하지만 농민권리와 농민인권은 별 개의 개념이 아니다. 본 연구에 서 편의상 <농민권리선언> 혹은 농민권리라고 썼지만 이는 농민인권의 개념과 다르지 않다. 토론회에서 한 전문가는 '권리' 대신 '인권'이라고 쓰는 것은 정치적으로 호소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그 후 비아 캄페시나는 FIAN(Foodfirst Information and Action Network) 및 CETIM(Centre Europe-Tiers Monde)의 지원 하에 2004년에서 2006년까지 매년 농민인권 침해에 관한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2008년 <농민권리선언>(Declaration of on the Rights of Peasants - Women and Men) 초안을 작성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9년 서울에서 열린 비아 캄 페시나 농민인권회의에서 이 선언문을 채택하고 나아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이를 채택해 줄 것을 청원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유엔 <농민권리선언>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2012년 9월에 개방형 국가 간 실무 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했다.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여타 사람들의 인권 에 관한 유엔 선언문 작성 임무를 맡은 실무 그룹의 구성은 비아 캄페시나와 같은 국제적 농 민조직과 인권 활동가들이 10여 년 넘게 활동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농민권리선언>의 주요 내용

유엔 인권이사회의 <농민권리선언>은 2017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발표됐고 개방형 국가 간 실무그룹 회의는 네 차례 진행되었다. 먼저, 유엔 인권이사회 차원의 <농민권리선언>은 2013 년 6월에 처음으로 발표되었다.(UN Human Rights Council, 2013). 이 선언문의 상당부분은 비 아 캄페시나가 제시한 <농민권리선언>을 참고해 작성됐다. 첫 번째 선언문 조항은 모두 13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조항인 농민의 정의를 제외하면 농민의 권리는 모두 12개 조항에 해당된다.

두 번째 유엔인권이사회 <농민권리선언>은 2015년 1월에 발표되었다. 두 번째 선언문은 첫 번째 선언문보다 좀 더 체계적이고 권리조항도 대표 확대되었다. 무엇보다 첫 번째 선언문은 비아 캄페시나의 <농민권리선언>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 선언문 내 많은 용어와 체계 가 유엔의 언어체계와 구조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대폭 수정했다. 또한 권리 내용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 규정하였다. 두 번째 선언문에서는 특히 여성농업인 관련한 항목이 두 항목(성 평등, 농촌여성의 권리)으로 나눠 규정할 정도로 여성농업인의 권리를 강조했고 국가 와 국제기구의 의무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엔 인권이사회 <농민권리선언>은 2017년 3월에 발표되었고 이후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논의과정을 가졌다. 세 번째 선언문은 두 번째 선언문을 바탕으로 유사, 중복되는 조항을 간결하게 통합해 전체 27개 조항으로 줄였다. 예를 들어, 두 번째 선언문에 서는 농촌여성의 권리 규정에 대해 "성 평등"과 "농촌여성의 권리"로 따로 규정했으나 세 번째 선언문에서는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 "여성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여타 여성의 권리" 로 규정했다. 기타 내용은 두 번째 선언문과 비슷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시기별 <농민권리 선언>의 구체적인 권리 조항은 다음 <표 1>과 같다.

조항	2013년 선언문안(2013.06.)	2015년 선언문안(2015.01.17)	2017년 선언문안(2017.03.06)
1	농민의 정의	파트1-정의와 기본 원칙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의 정의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의 정의
2	농민의 권리	국가의 의무	국가의 일반 의무
3	생명과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존엄, 평등 그리고 비차별	평등과 비차별
4	토지와 영토에 대한 권리	성 평등	여성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여타 여성의 권리
5	종자와 전통지식과 실천에 대한 권리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 발전 그리고 식량주권	천연자원권과 발전권
6	농업 생산수단에 대한 권리	파트2-실질 권리 농촌여성의 권리	생명,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7	정보에 대한 권리	생명, 자유, 신체 및 개인 안전에 대한 권리	이동의 자유
8	농산물 가격 및 시장 결정 의 자유	국적 및 법적 존재에 대한 권리	사상, 의견, 표현의 자유
9	농업가치의 보호에 대한 권리	이동의 자유	결사의 자유
10	생물다양성에 대한 권리	사상, 의견, 표현의 자유	참여의 권리
11	환경을 보존할 권리	결사의 자유	생산, 마케팅, 유통에 관한 정보권
12	결사, 의견, 표현의 자유	참여와 정보에 대한 권리	정의에 대한 접근
13	정의에 접근할 권리	생산, 마케팅, 유통에 관 한 정보에 대한 권리	일할 권리
14		정의에 대한 접근	일터에서의 안정과 건강에 대한 권리
15		일할 권리	식량과 식량주권에 대한 권리
16		일터에서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권리	적절한 소득과 생계 및 생산 수단에 대한 권리
17		식량에 대한 권리	토지와 기타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
18		적절한 소득과 생계에 대한 권리	안전하고 깨끗하며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19		토지와 기타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	종자에 대한 권리

<표 1> 각 시기별 <유엔농민권리선언> 내용

20	안전하고 깨끗하며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생물다양성에 대한 권리
21	생산수단에 대한 권리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22	종자에 대한 권리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23	생물다양성에 대한 권리	건강에 대한 권리
24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25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교육과 훈련에 대한 권리
26	건강에 대한 권리	문화적 권리와 전통지식
27	주거에 대한 권리	유엔과 기타 국제조직의 책임
28	교육과 훈련에 대한 권리	
29	문화적 권리와 전통지식	
30	유엔과 기타 국제조직의 책임	

그렇다면 유엔에서 왜 농민권리선언에 이처럼 관심을 가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여타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유엔선언문 실무 그룹의 세 번째 세션에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요티 상게라 (Jyoti Sanghera)는 유엔농민인권의 중요성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했다.³⁾

첫째,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의 문제를 대응하는 데 농민권리선언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 미 2015년에 195개 국가는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파리기후협약(COP21)을 채택했 다. 2020년부터 강제 실행되는 이 협정을 위해 각국에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청정에너 지를 개발해야 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수급과 이용체계를 전환해야 한다. 그 가운데 중요한 과 제 중 하나가 농업에서의 화석연료 사용의 감축이다. 인간이 만드는 전체 온실가스 가운데 33%는 농업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두 번째는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실현하는 데 농민권리선언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유엔에서의 2016년은 기존의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새로운 지 속가능 개발 2030 아젠다로 전환하는 해였다. 2030 아젠다는 2015년 9월 모든 유엔 회원국가 가 채택했고 201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17개의 목표로 경 제, 사회, 그리고 환경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통합적 비전을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비전 가운데 몇몇은 농민인권의 실현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3. <농민권리선언>의 의의 및 시사점

유엔인권이사회 차원의 농민권리선언 논의는 아직 공식적으로 결의안이 채택되지는 않았을 지라도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무엇보다 '농민'이 처음으로 인권의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인권의 대상은 주로 사회적 약자인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

³⁾ 다음 내용은 Ms. Jyoti Sanghera가 유엔농민권리선언을 위한 실무 그룹 세 번째 세션에서 발언한 개회사 내용이다.(UN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2016.)

애인, 이주민, 난민, 성소수자가 주요 대상이었으나 유엔 차원의 농민권리선언 논의는 농민을 본격적으로 인권의 대상, 즉 사회적 약자로 간주하게 됐다는 점이다. 따라서 역사 이래로 농 민은 가장 오랜 동안 자본, 권력, 지주에 의해 착취와 억압, 멸시와 천대를 받아왔음에도 불 구하고 인권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는 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엔 차원의 농민 인권 논의는 인권 역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농민(농업, 농촌 포함) 문제에 대해 유엔의 적극적인 개입이 시작됐다는 점이다. 농 민, 농업, 농촌의 문제는 현재 개별 국가 혹은 지역을 넘어선 복잡다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엔과 같은 국제적 공공기구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 렀다. 특히, 식량, 종자 등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다국적 기업의 독점과 세력화의 문제를 유엔 차원에서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경쟁과 효율을 강조한 신자유주의 경제체계에 대한 거부와 대안이 제시됐다는 점이 다. 농업의 기계화, 규모화, 효율화, 첨단화는 비록 편리하지만 농민을 농토에서 구축하는 역 할을 하기 때문에 농민(중소영세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권리를 적극 보호할 필요 성을 유엔에서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넷째, 그동안 소외되거나 무시되어 왔던 여성농민과 종자주권을 특히 강조했다는 점이다. 농민이면서 여성은 이중의 차별을 받기 때문에 여성농민의 권리 회복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농민들에게도 그동안 습관적으로 이뤄져왔던 성차별과 성적 불평등의 문제 에 대해 인식의 전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등 유엔 차원의 정책 목표에 농민, 농촌, 농업 문제를 핵심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이어 유엔이 발표한 지속가능개 발목표(SDGs)의 핵심 과제는 기아와 빈곤 퇴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 개도국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민과 그들의 생업인 농업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불 가능한 일이다.

4. 국내 농민인권 논의 동향

국내에서 농민인권에 대한 논의는 일부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지만 연구보고서나 연구논문으로 발표된 사례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⁴⁾ 그나마 박경철(2015)이 2014년에 수립된 「충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성태규 등, 2014) 내용⁵⁾ 가운데 농민인권 분야 내용을 발췌해 정리한 "충남 농업인인권 현황과 과제"와 이수미(2016)가 유엔인권이사회의 농민권리선언 논의 동향과 쟁점 사항을 정리한 "농민의 권리, 유엔 농민권리선언"⁶⁾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 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농민인권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농민의 삶의 질과 권리에 관한 연 구는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왔고 여기에는 많은 연구들이 존재한다. 특히 갈수록 확대되어 가고 있는 도시와 농촌주민 간의 삶의 질 격차에 관한 연구, 과소·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농촌노인들의 생활문제 등에 관한 연구, 그리고 농촌에서의 양성평등과 여성농민의 권리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먼저, 박대식 마상진(2007)은 "도시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지수화 방안 연구"에서 도시와

5) 『열린 충남』 겨울호, pp.29-33.

이는 기존의 농민의 문제가 주로 농민운동이나 단편적인 현안 문제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거시적인 차원의 권리나 인권의 문 제로는 접근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⁶⁾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제242 이슈보고서.

농촌 간 삶의 질 격차를 객관적이고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개별 지표들을 점수화하고 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하여 삶의 질 지표의 지수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석소현·김귀분 (2008)은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 비교 연구"에서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을 비교함으로써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과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자 중심의 개별화된 간호중재 개발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 하고자 했다. 또한 고승희·이수철(2015)은 농촌은 아니지만 농촌지역이 많은 충남도에서 "충 남도민 인권의식 실태조사"를 조사하기도 했다.

최근 농촌지역 노인자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최선 미·홍준형(2016)은 "도시와 농촌 노인들의 자살 영향요인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에서 노인 자살의 영향요인에 대해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중심으로 질적 분석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와의 상호작용적 측면에서 '자살'을 조망하고 노인자살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시도 했다. 김득희·황경열(1998)는 "농촌과 도시 노인의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건강상태간의 관 계 연구"를 통해 농촌과 도시 노인의 삶을 비교했다.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의 <농민인권선언> 논의에서도 여성농민의 권리는 중요한 쟁점이듯 농 촌에서의 성별 불평등 문제는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다. 대표적으로 박민선·허미영(2005)은 "한국농가의 성별 불평등과 변화가능성: 가족경영협약서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에서 농가의 성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써 가족경영협약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농민인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농민운동이다. 사실 우리나라 농민운동의 역사는 농민 인권 수호를 위한 투쟁의 과정이라고 해도 과장은 아닐 것이다. 비아 캄페시나가 국제사회에 서 농민의 권리를 주장했듯이 우리나라의 많은 농민단체, 그 가운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 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많은 농민단체 등이 각기 농 민의 권리 수호를 위해 매진해 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농민운동의 발전과 도전에 관한 연 구도 함께 진행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윤수종(2010)은 "1970년대 이후 주류 농민운동의 형성 과 도전" 연구에서 1970년대 이후 주류 농민운동의 흐름 가운데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조직 형성과 투쟁 과정 그리고 향후 역할에 대해 논의했고, 박신규·정은정(2010)은 "여성농 민의 사회적 정체성 형성과 여성농민운동의 발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을 중심으 로" 연구에서 여성농민의 사회적 정체성 형성과 변화라는 개념을 가지고 여성농민운동사를 살펴보았다.

Ⅲ. 충남도 농민인권 실태 분석

1. 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농민인권의 조사 기준과 항목으로 2013년에 마련된 <농민권리선언>을 참고로 했다. 그 이유는 첫째, 2013년도 이후 마련된 <농민선리선언>은 기본적으로 2013년 안을 토대 로 확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2015년과 2017년에 마련된 <농민권리선언>의 내용은 분량 과 항목 수준에서 매우 범위가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측정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농민인권 실태조사의 기준과 항목 설정은 실태조사의 명확성과 현실성을 감안해 2013년에 마 련된 <농민권리선언> 내용을 참고로 작성됐다.7)

⁷⁾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12개 주요 항목이 담겨있다: ①농민권, ②생명권과 표준 생활권, ③토지와 지역의 보존권, ④종자, 전 - 31 -

본 연구의 농민인권 실태조사는 크게 설문조사와 인터뷰조사로 나누어 실시됐다. 먼저 설문 조사표를 조사대상자에게 e-메일 혹은 직접 전달해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했다. 그 후 설문조 사표가 다 작성되면 개별 응답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했다. 응답자에 대한 개별 인 터뷰를 통해 설문조사 내용을 보완하고 농민인권 실태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심층 인터뷰는 응답자가 소재한 지역 또는 충남연구원 회의실에서 개별 혹은 2~3인 그룹 단위로 실 시됐다. 설문조사와 인터뷰 조사의 대략적인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인터뷰 대상: 농민인권에 관심 있는 농민, 지역활동가, 교육자, 연구원 등 모두 12명.⁸⁾ 인 터뷰 대상자의 기본 현황은 다음 <표 2> 참조

2 조사 기간: 2017년 5월~6월

- 3 조사 내용: 농민인권 주요 및 세부 항목별 현재 실태 및 향후 중요도 평가, 농민인권에 관
 한 의견 및 정책 제안 등
- 조사 방법: 설문조사 실시 이후 개별 또는 그룹 단위로 인터뷰 실시. 설문조사는 피조사자
 가 농민의 권리 12항목과 세부 항목에 대해 현재 평가와 향후 중요도 각 항목별에 10점(0-10) 척도로 평가하도록 함

응답자	성명	성별	연령	직업	거주지(직장)
0	강*주	남성	40대	농민, 교육자, 지역활동가	홍성
0	오 *	여성	40대	농민, 교육자	홍성
8	이*희	여성	40대	지역활동가	아산
4	박*우	남성	50대	농민	아산
6	한*훈	남성	30대	공무원	홍성
6	신*봉	여성	40대	농민	서산
Ø	전*배	남성	40대	농민	서산
8	신*연	여성	40대	농민	부여
9	임*빈	남성	60대	농민, 지역활동가	청양
0	김*봉	남성	60대	지역활동가	당진
•	한*숙	여성	40대	농민	당진
Ø	강*야	여성	40대	연구원	공주

<표 2> 인터뷰 대상자의 기본 현황

2. 조사 결과

통지식, 영농 활동권, ⑤농업생산 수단 보유권, ⑥정보 획득권, ⑦농산물 가격과 시장 결정권, ⑧농업가치의 보호권, ⑨생물다 양성 수호권, ⑩환경 보호권, ⑪결사, 의견, 표현권, ⑫정의에 대한 접근권

⁸⁾ 농민과 농민 관련 전문가를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농민 자신이 느끼는 농민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농민의 문제를 객 관적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관련 전문가의 판단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12명의 인터뷰로 농민 인권을 논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설문조사 등 확대조사 및 분석 방법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1) 세부 농민권리 항목 분석 및 평가

(1) 농민권

전체 12개 조항 권리 항목 가운데 첫 번째 항목인 <농민권>에는 '모든 농민, 여성과 남성 의 동등한 권리', '국제인권법에서 인정되는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누릴 권리' 등을 포함해 모두 5개의 세부 항목이 있다.

조사결과, 5개 세부 항목 가운데 현재 평가 점수로는 '모든 농민,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가 4.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국제인권법에서 인정되는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누릴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로 인한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 리'가 똑같이 4.5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식량주권의 권리'가 가장 낮은 3.5점으로 나타났 고, 다음으로 '토지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구상, 의사결정, 실행, 모니터링에 참여 할 권리'가 3.8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5개 항목에 대한 향후 중요도를 보면, '식량주권의 권리'가 9.2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국제인권법에서 인정되는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누릴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로 인한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9.1점으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농민권> 가운데 '식량주권의 권리'는 현재 5개 세 부 권리 가운데 가장 취약하지만 향후 <농민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권리임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식량주권의 권리'는 <농민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매 우 취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권리보다 우선해서 회복되어야 할 권리임을 말해주 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식량자급률(곡물 포함)이 24% 안팎인 것을 감안한다면 당연한 결과라 고 할 수 있다.

세부 권리 내용	현재 평가 점수 (0-10점) (A)	향후 중요도점수 (0-10점) (B)	차이 (B-A)
1. 모든 농민,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	4.6	9.0	4.4
2. 국제인권법에서 인정되는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누릴 권리	4.5	9.1	4.6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지위로 인한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4.5	9.1	4.6
 4. 토지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구상, 의사결정, 실행, 모니터링에 참여할 권리 	3.8	8.9	5.1
5. 식량주권의 권리	3.5	9.2	5.7

<표 3> <농민권>의 실태 및 향후 중요도 평가

이와 같은 결과는 세부 인터뷰조사에서도 나타났다. 홍성의 ①강*주는 "현재 기본권이 심 각하게 훼손된 상태이다. 특히, 4항과 5항이 그렇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부여의 ③신*연은 "기본권인 만큼 헌법에 들어가야 한다. 식량주권을 헌법에 들어갈 수 있도 록 개헌 시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식량주권의 권리'가 농민의 기본적인 권

리인 만큼 현재 논의되고 있는 헌법 개정에서 식량주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함을 강조했다. 앞서 두 가지 권리와는 달리 눈여겨볼만한 권리로는 '모든 농민,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 리'에 대한 평가이다. 농촌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평등권은 유엔인권이사회의 <농민권리선언> 에도 특히 강조하는 권리이기도 하다. 그만큼 농촌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격차로 인한 인권의 문제는 심각하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세부 인터뷰에서 잘 나타났다.

당진의 ❶한*숙은 "여성을 경시하는 풍조가 여전히 만연하여 마을의 중요한 일들을 부녀회 에서 앞장서서 하고 있음에도 대우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며 여성들이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마을의 중요한 사항에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여성농민에 대한 권리 강화를 위해 농업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여성농민은 가정뿐만 아니라 마을 활동에서도 많은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농업정책에서도 여성농민의 권리 강화를 위한 사업 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2) 생명권과 표준 생활권

농민의 <생명권과 표준 생활권>에는 모두 13개의 세부 항목이 있다. 설문조사 결과 이들 13 개 항목 가운데 현재 '적합한 주거와 의복을 누릴 권리'가 5.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 로 '음용수, 위생, 교통수단, 전기, 통신, 휴식 등을 누릴 권리'가 5.6점, '육체적, 정신 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와 '출산과 육아를 결정할 권리'가 각각 5.5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 타났다. 이들 4개 항목은 다른 권리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실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생명권과 표준 생활권>에서 취약한 권리로는 '적절한 소득을 보장 받을 권리'가 3.4점으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살충제, 비료와 같은 농화학제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와 '여성농민의 가정폭력, 성적, 언어적, 심리적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각각 4.2점, '존엄하게 살 권리'가 4.9점으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생명권과 표준 생활권>의 향후 중요도 평가에서는 '여성농민의 가정폭력, 성적, 언어적, 심리적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9.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적절한 소 득을 보장 받을 권리'가 8.9점, '존엄하게 살 권리'가 8.9점, '출산과 육아를 결정할 권 리'가 8.8점, '여성농민의 육체가 통제되고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 가 8.7점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여성농민에 대한 권리가 향후에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4> <생명권과 표준 생활권>의 실태 및 향후 중요도 평가

세부 권리 내용	현재 평가 점수 (0-10점) (A)	향후 중요도 점수 (0-10점) (B)	차이 (B-A)
1. 방해, 퇴거, 박해, 임의 체포 등을 받지 않을 권리	5.3	8.4	3.1
2. 존엄하게 살 권리	4.9	8.8	3.9
3. 적절한 소득을 보장 받을 권리	3.4	8.9	5.5
4. 건강하고 충족한 음식과 전통 음식 유지 권리	5.3	8.3	5.0
 5.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의 소비, 가족의 기본적 욕구 충족에 사용, 다른 사람에게 분배할 권리 	5.3	8.6	3.3
6. 음용수, 위생, 교통수단, 전기, 통신, 휴식 등을 누릴 권리	5.6	8.3	2.7
7. 적합한 주거와 의복을 누릴 권리	5.8	8.2	2.4
8. 교육과 훈련을 받을 권리	5.3	8.3	3.0
9.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	5.5	8.5	3.0
 10. 살충제, 비료와 같은 농화학제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 	4.2	8.5	4.3
11. 여성농민의 가정폭력, 성적, 언어적,심리적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4.2	9.2	5.0
12. 여성농민의 육체가 통제되고 상업적 목 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	5.1	8.7	3.6
13. 출산과 육아를 결정할 권리	5.5	8.8	3.3

농민의 <생명권과 표준 생활권>에 대한 평가 가운데 가장 주목이 되는 권리는 무엇보다 '적절한 소득을 보장 받을 권리'였다. 다른 어떤 권리보다 농민의 소득보장에 대한 권리가 가장 취약하다는 것이다. 농가의 소득하락은 이미 도농 소득격차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1990년 대 농산물 수입 개방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까지 이 어진 쌀값 폭락으로 농민의 소득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세부 인터뷰조사에서 홍성의 ❶강*주의 응답은 이러한 위기의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는 "농민에겐 '권리' 이전에 '생존'의 문제가 절박하다."고 응답했다. 농민에게 많은 권리 가 요구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존'의 차원에서 무엇보다 '소득'의 문제가 더 절실하 다는 점이다. 농민의 소득보장 다음으로 여성농민에 대한 평가는 주목할 만하다. '여성농민의 가정폭력, 성적, 언어적, 심리적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향후 중요도 평가에서 9.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출산과 육아를 결정할 권리' 등 이와 관련한 항목도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 은 향후 여성농민의 권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 토지와 지역의 보존권

농민에게 토지는 필요불가결한 조건이다. 토지가 없다면 농민도 존재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많 은 농지(토지)를 비농민이 소유하고 있다. 현재 농민의 자경농지 비율은 50% 안팎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즉 농민의 농경지 절반 이상은 임차지라는 것이다. 이는 농지가 더 이상 농업 소득의 기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투기의 대상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농민의 기본권 <토지와 지역의 보존권>에는 모두 6개의 세부 권리 항목이 있다. 이에 대한 평가 결과, '주거와 영농을 위해 토지를 소유할 권리'가 5.9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고, 사냥과 채집,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5.8점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이들 두 권리는 다른 권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사용 토지를 소유하고 가꿀 권리'는 3.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정부 등 공공영역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가운데 많은 토 지들이 이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고 이를 농민들이 활용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 라고 할 수 있다.

<토지와 지역의 보존권>의 향후 중요도 평가 결과, '주거와 영농을 위해 토지를 소유할 권 리', '공정한 보상이 없는 한 이주를 거부할 권리'가 각각 9.0점, 8.9점으로 높게 나타났 다. '주거와 영농을 위해 토지를 소유할 권리'는 현재에도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 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중요한 권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평가한 '공정한 보상이 없는 한 이주를 거부할 권리'는 현재에도 중요한 권리이기도 하다. 이는 많은 농민과 지역주민이 지역의 개발로 인해 농지가 잠식되고 자신의 터전이 잃게 되어 이전하더라도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 부분의 개발행위에서 정부의 밀실행정, 즉 정보의 비공개가 지역사회에서 갈등과 마찰의 시초 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 외 6개 세부 항목 가운데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고, 사냥과 채집,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삼림과 어장을 보호받고 이익을 얻을 권리', '토지개혁으로부터 수혜를 받을 권리'는 모두 8.8점으로 같았다. 전체적으로 보아도 <토지와 지역의 보존권>의 향후 중 요도 평가는 8.7~9.0점으로 6개 세부 권리 항목 간 편차가 크지 않았고 점수 또한 비교적 높 은 편이여서 향후 이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 권리 내용	현재 평가 점수 (0-10점) (A)	향후 중요도 점수 (0-10점) (B)	치아 (B-A)
1. 주거와 영농을 위해 토지를 소유할 권리	5.9	9.0	3.1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고, 사냥과 채집,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5.8	8.8	3.0
3. 미사용 토지를 소유하고 가꿀 권리	3.8	8.7	4.9
4. 삼림과 어장을 보호받고 이익을 얻을 권리	4.4	8.8	4.4
5. 공정한 보상이 없는 한 이주를 거부할 권리	4.5	8.9	4.3
6. 토지개혁으로부터 수혜를 받을 권리	4.6	8.8	4.2

<표 5> <토지와 지역의 보존권>의 실태 및 향후 중요도 평가

<토지와 지역의 보존권>에 관한 세부 인터뷰조사에서도 토지의 문제를 많이 지적했다. 홍성의 ①강*주는 "토지 독점이 심각하다. 토지의 공공적 이용에 대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고 응답했고, 아산의 ④박*우가 "소유보다는 사용 또는 활용할 수 있는 권리에 중심을 둘 필 요가 있다."고 말한 것처럼 토지에 대한 농민의 이용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공주의 ♥강*야가 "경자유전의 원칙(헌법)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심하다. 정상 화를 위해서 합리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처럼 법과 현실적 괴리가 너무 큰 만 큼 향후 농민의 권리측면에서도 이에 대한 합리적 대안 모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 다.

(4) 종자, 전통지식, 영농 활동권

농민의 <종자, 전통지식, 영농 활동권>은 토지 다음으로 중요한 영농수단 및 지식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종자는 농업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만큼 농업활동의 중요한 생산요 소이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농부는 굶어죽을지언정 종자는 남긴다."고 할 정도로 종 자를 생명처럼 여겼다. 이처럼 종자는 영농활동에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지만 현재 우리나라 종자주권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GM(유전자변형) 종자와 농산물이 도입되면서 농민과 시민단체에 의해 종자 주권과 생명권에 대한 강한 저항이 전개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종자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GSP(골든시드프로젝트)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있고 민간 영역에서도 GMO 반대운동과 토종씨앗의 보급을 확대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농민의 <종자, 전통지식, 영농 활동권>에 대한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두 8개의 세부 권리 항목 가운데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은 '자신의 영농방식을 선택 할 권리'가 5.7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건강과 환경보전을 위해 자신이 선택한 기술 을 사용할 권리'가 5.5점, '농업, 어업, 축산시설을 사용할 권리'가 5.1점 순으로 나타났 다. 평가도가 높은 권리 항목들은 대체로 영농과 기술을 선택할 권리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농민들이 농업 기술과 영농방식을 선택하는 데는 어느 정도 자유롭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농민의 <종자, 전통지식, 영농 활동권> 가운데 평가 점수가 낮은 항목은 '농 업의 산업모델을 거부할 권리'가 3.8점으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자신이 원한 다양한 종 자를 결정할 권리'와 '경제적, 생태적, 문화적으로 위험한 작물을 거부할 권리'가 각각 4.1점, 4.3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항목의 공통적 특징은 산업화된, 현대화된 농업방식과 모델을 거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사실은 농민은 '경제적, 생태적, 문화적으로 위험한 작물을 거부할 권리가 비교적 낮다'는 점이다. 이는 아직까지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GM작물과 같이 우리나 라 농업에서 경제적, 생태적, 문화적으로 위험한 작물을 거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농민은 경제적, 생태적, 문화적으로 다소 위험할지라도 소득 증대, 선택의 제한 등의 상황에서 이러한 작물을 현실적으로 거부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세부 권리 내용	현재 평가 점수 (0-10점) (A)	향후 중요도 점수 (0-10점) (B)	차이 (B-A)
1.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종자를 결정할 권리	4.1	8.8	4.7
2. 경제적, 생태적, 문화적으로 위험한 작물을 거부할 권리	4.3	8.9	4.7
3. 농업의 산업모델을 거부할 권리	3.8	8.6	5.3
4. 농어업의 토착지식을 보전하고 발전 시킬 권리	4.0	8.9	4.9
5. 농업, 어업, 축산시설을 사용할 권리	5.1	8.3	3.2
6. 자신의 영농방식을 선택할 권리	5.7	8.8	3.1
7. 건강과 환경보전을 위해 자신이 선택한 기술을사용할 권리	5.5	8.9	3.4
8. 농민이 생산한 종자를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권리	4.8	8.7	3.9

<표 6> <종자, 전통지식, 영농 활동권>의 실태 및 향후 중요도 평가

<종자, 전통지식, 영농 활동권>의 향후 중요도 평가를 보면, '경제적, 생태적, 문화적으로 위험한 작물을 거부할 권리', '농어업의 토착지식을 보전하고 발전시킬 권리', '건강과 환경보전을 위해 자신이 선택한 기술을 사용할 권리'가 모두 8.9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GMO 와 같이 건강과 생태에 위험한 작물을 거부하고 농어업의 토착지식을 보전하고 발전시키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종자를 결정할 권리'와 '자신의 영농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모두 8.8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민의 종자선택권과 영농방식의 선택권이 향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중요도 평가는 <종자, 전통지식, 영농 활동권>에 관한 세부 응답에서도 나타났 다. 홍성에서 토종씨앗 보존 활동을 하는 ②오 *는 토종씨앗 보급 활동도 어렵지만 GMO 등이 잘못 전파되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관련법을 제정해 종자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 다. 그는 "농민이 자가 채종을 해서 농사짓기란 쉽지 않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유전 자조작작물(GMO)의 꽃가루가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데 막을 방법은 많지 않는 게 현실이다. '종자주권'법을 만들어서 우리 종자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응답했다.

(5) 농업생산 수단의 보유권

농민이 농업생산을 위해서는 다양한 생산수단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와 같이 고도로 산업화 되어 가고 있는 영농환경에서 농업의 다양한 생산수단은 영농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상황 이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생산수단이 갈수록 대형화, 첨단화, 고비용화 되어가면서 농민의 접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앙과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앙기와 콤바인이 필요하지만 보통 농민이 이를 구입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마을 내 일부 규모화된 농 가에서 구입한 기계를 활용한다. 그래서 중소농이 자립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물론 일부 지자 체와 농협 등에서 농기계 대여사업을 하기도 하지만 중소농들이 활용하기는 쉽지 않는 상황이 다.

농민의 <농업 생산수단의 보유권>에는 모두 5개의 세부 권리 항목이 있다. 이들 권리에 대 한 평가 결과, '영농에 필요한 자금, 자재, 도구를 획득할 권리'가 5.5점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다음으로 '농업생산을 위한 관개 등 수리권'이 5.4점, '농산물 판매를 위한 운송, 건조, 저장시설을 사용할 권리'가 5.1점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농민은 상대적으로 영농 에 필요한 자금과 자재, 도구를 획득할 권리가 보장되고 관개 및 수리권도 있고 운송, 건조, 저장시설을 사용할 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권리 내용	현재 평가 점수 (0-10점) (A)	향후 중요도 점수 (0-10점) (B)	치아 (B-A)
1. 영농에 필요한 자금, 자재, 도구를 획득할 권리	5.5	8.5	3.0
2. 사회, 문화, 윤리적 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의 생산 도구와 기술을 습득할 권리	4.8	8.4	3.6
3. 농업생산을 위한 관개 등 수리권	5.4	8.5	3.1
4. 농산물 판매를 위한 운송, 건조, 저장시설을 사용할 권리	5.1	8.3	3.2
 정부의 농업예산의 계획, 집행, 적용에 관해 참여할 권리 	3.7	9.0	5.3

<표 7> <농업 생산수단의 보유권>의 실태 및 향후 중요도 평가

반면, '정부의 농업예산의 계획, 집행, 적용에 관해 참여할 권리'는 3.7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농민은 생산수단에 대한 접근권은 어느 정도 보장되지만 이를 결정하는 정책 과정에서는 거의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세부 인터뷰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생산수단 보유의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지자체 혹은 농협에 서 이러한 일을 대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홍성의 ①강*주는 "토지와 마찬가지로 농업생산의 수단 역시 공공적 활용이 필요하다. 농협이 이 역할을 하도록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토 지뿐만 아니라 농업생산수단의 공적 활용이 필요하고 농협이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 다. 홍성의 ②오 *와 아산의 ③이*희, 당진의 ①한*숙 등 주로 여성농민이 농업 생산수단의 고가격으로 청년, 귀농자, 여성에게 특히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6) 정보 획득권

농민이 영농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다. 먼저, 농사에 관한 기술정보는 필수이다. 자신이 재배하는 작물에 대해 파종부터 수확까지 단계별 필요한 재배기술을 알아야 만 농사가 가능하다. 또한 생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가격정보가 필요하다.

농민의 <정보 획득권>에 대한 조사 결과 '무엇을 어떻게 생산하고 소비할 것인가를 결정할 권리'가 4.8점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정책, 기술, 가격 등 농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권리'가 4.5점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낮은 수준이지만 농민의 생산과 소비의 권리는 어느 정 도 보장되고 정책, 기술, 가격 등 농민에게 필요한 정보는 어느 정도 획득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적절한 정보를 획득할 권리'는 4.0점으로 가장 낮았다. 농민들은 토종씨앗과 같은 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적절한 정보를 얻고 싶지만 쉽지 않 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중요도 평가에서는 '정책, 기술, 가격 등 농 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권리'가 9.2점으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두 개의 권리 항목은 8.8점으로 동일했다.

세부 권리 내용	현재 평가 점수 (0-10점) (A)	향후 중요도 점수 (0-10점) (B)	치이 (B-A)
 정책, 기술, 가격 등 농민에게 필요 한 정보를 획득할 권리 	4.5	9.2	4.7
 무엇을 어떻게 생산하고 소비할 것인가를 결정할 권리 	4.8	8.8	4.0
 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적절한 정보 를 획득할 권리 	4.0	8.8	4.8

<표 8> <정보 획득권>의 실태 및 향후 중요도 평가

농민의 <정보 획득권>에 관한 세부 인터뷰조사 결과, 부여의 ③신*연은 정보 전달의 불균형 성으로 인한 불균형 혜택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너무 취약하다. 그 러다 보니 소수가 공유하고 혜택을 누리는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정보에 대한 접근과 공유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든다."고 응답했다. 농촌에서 정보를 독점하는 소수의 사람에 의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에서 이뤄지는 많은 사업들이 지역의 공 무원과 가까운 사람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없지 않기 때문에 정보 독점으로 인한 폐단을 막는 것도 향후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7) 농산물 가격과 시장 결정권

농민의 가장 큰 경제적 어려움 중에 하나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없 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공장의 생산자가 가격을 결정한다. 하지만 농 민은 자신이 애써 가꾼 농산물에 대한 시장 결정권이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농민은 자신이 생산한 1차 생산물을 중간상인 혹은 중간대리상을 통해 판매하게 된다. 그래서 최종가격은 도 시의 판매상들이 가격을 정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농산물 가격은 최종적으로 몇 배의 높 은 가격으로 판매되지만 농가 혜택은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농민들은 가격결정권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품목별 생산자조 직화를 통해 생산의 효율성을 높여 가격협상력을 높이는가 하면 로컬푸드 직판장을 통해 농가 의 가격결정력을 높이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루트를 통해 판매되는 농산물은 여전히 일부에 그치고 있고 대부분의 농산물은 중간상인 혹은 중간 도매법인을 통해 판매되기 때문에 농산물에 대한 농민들의 가격결정권은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농민의 <농산물 가격과 시장 결정권>에 대한 평가 결과,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우선 취 득하고 저장할 권리'가 5.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지역 시장에서 생산물을 판매할 권리'가 5.0점으로 나타났다. 즉, 농산물에 대한 저장과 지역 내 판매할 권리는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다. 반면, '공정한 가격을 획득할 권리'와 '생산물의 가격을 결정 할 권리'는 각각 3.2점, 3.7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노동에 대한 공정한 임 금 획득과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권리'와 '수확물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보장받을 권리' 가 3.7점으로 동일하게 나타났고, '식량주권 보장을 위해 공동체를 기반한 상업화를 발전시킬 권리'가 3.8점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농민들이 느끼기에 농산물에 대한 공정한 가격이 거의 이뤄지지 않을 뿐 만 아니라 농민들이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가격결정권이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세부 권리 내용	현재 평가 점수 (0-10점) (A)	향후 중요도 점수 (0-10점) (B)	코⊦이 (B−A)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우선 취득하고 저장 할 권리 	5.4	8.5	3.1
2. 지역 시장에서 생산물을 판매할 권리	5.0	8.8	3.8
3. 생산물의 가격을 결정할 권리	3.4	9.2	5.8
4. 공정한 가격을 획득할 권리	3.2	9.5	6.3
 5. 노동에 대한 공정한 임금 획득과 기본적 욕구 를 충족시킬 권리 	3.7	9.4	5.7
6. 수확물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보장받을 권리	3.7	9.3	5.6
 신량주권 보장을 위해 공동체를 기반한 상업화를 발전시킬 권리 	3.8	9.2	5.4

<표 9> <농산물 가격과 시장 결정권>의 실태 및 향후 중요도 평가

농민의 <농산물 가격과 시장 결정권 >에 대한 세부 인터뷰 조사에서도 농민의 가격결정권의 취약성에 대해 지적했다. 홍성의 ❶강*주는 "이 항목에 대해 농민에겐 어떤 권리도 없다고 판단된다. 최악의 상태이다."고 평가했다. 가격결정권에 대해 농민은 어떠한 권리도 없다고 평가했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수입 개방의 영향이 크다. 당진의 ❶한*숙는 "수입농산물과 경쟁해야 하는 시장에서 가격결정이란 용어 자체가 의미 없다."고 했다. 값싼 수입 농산물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농민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정은 ⑭강*야가 "산업화의 논리로 인해서 자신의 노동을 투입해서 생산된 '생산물' 에 대한 결정권이 전무하다. 모두 시장기능에 위임해 버린 상황이다."고 말한 것처럼 산업화 된 사회에서 자신의 노동가치 등 모든 가치 영역을 시장 기능에 맡겨놓은 결과이기도 하다.

(8) 농업가치의 보호권

농업은 단순한 농산물의 생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농업은 그야말로 농민의 온전한 삶 전 체를 포괄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농사는 다양한 문화와 세시풍습과 연관되어 있다. 정월보름 에 한 해 풍년농사를 기원하기 위해 달집을 태우고 탑돌이를 하기도 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내고 일손이 많이 필요한 파종과 수확기 때는 품앗이와 두레를 통해 이웃의 농사 일을 도왔다. 그리고 추수를 마치면 한해 농사에 감사하는 제를 올렸다. 그해 생산한 농산물 로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조상에게 바치고 가족, 이웃과 함께 나눠먹었다. 이러한 모든 과정 이 농업의 가치와 연결된다.

하지만 농업이 산업화, 규모화, 첨단화되고 농촌주민이 도시로 떠나면서 농업과 농촌이 가 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와 가치는 사라지고 있다.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산물 감소와 인구 감소 는 단순히 경제적인 손실만이 아니라 농업의 문화와 가치의 손실을 가져온다. 이러한 손실은 비단 농민만의 손실이 아니라 수천 년간 이어져온 우리의 전통문화의 소멸을 의미한다.

농민의 <농업가치의 보호권>에 대한 평가 결과, '향토지식을 발전시키고 보호할 권리'가 4.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문화와 지역 농업의 가치를 인식하고 보호할 권리'가 4.5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토지식을 발전시키고 지역농업의 가치를 인식하고 보호할 권리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농업의 가치를 파괴할 수 있는 개입을 거부할 권리'와 '농민의 정신성을 표현할 권리'는 각각 3.3점, 3.6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농촌의 가치 를 파괴할 수 있는 많은 개입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농민의 정신성을 표현할 권리도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중요도 평가에서도 나타난다. 4개 권리 항목에 대한 향후 중요도 평 가에서 '농업의 가치를 파괴할 수 있는 개입을 거부할 권리'가 9.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 다. 농민들에게는 농업의 가치를 파괴할 수 있는 개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향후 중요한 권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부 권리 내용	현재 평가 점수 (0-10점) (A)	향후 중요도 점수 (0-10점) (B)	차이 (B-A)
1. 문화와 지역 농업의 가치를 인식하고 보호할 권리	4.5	9.0	4.5
2. 향토지식을 발전시키고 보호할 권리	4.6	8.6	4.0
3. 농업의 가치를 파괴할 수 있는 개입을 거부할 권리	3.3	9.3	6.0
4. 농민의 정신성을 표현할 권리	3.6	8.9	5.3

<표 10> <농업가치의 보호권>의 실태 및 향후 중요도 평가

농민의 <농업가치의 보호권>에 관한 인터뷰조사에서 농업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산 의 ③이*희는 "농업의 가치는 점점 중요할 것이라고 본다. 농업, 농민의 문제는 '농업의 가 치'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오늘날 농업의 가치가 많이 추락했지만 농업과 농민의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④박*우는 "농업이 생산하는 문화와 정신의 가치는 일종의 공유재이므로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고 했다. 농업은 농산물의 생산뿐만 아니라 농 업이 생산하는 문화와 정신의 가치는 공공재와 다름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켜야할 중 요한 자산이라는 것이다.

(9) 생물다양성 수호권

농업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농업은 전통적으로 사라 질 위기에 있는 다양한 생명체를 복원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산업화, 규모화, 첨단화가 진행되면서 농업에서의 생물다양성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단작화, 상업화, 조작화만 남아있다. 특히 미국의 플랜테이션 농업을 위해 개발한 유전자조작 농산물은 안전성 측면에서 도 논란이 많지만 생물다양성을 말살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종자뿐만 아니라 규제적 인증제 또한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을 말살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산물 가공의 안정성을 위해 도입된 GAP, HACCP제도는 과연 우리나라 실정 에 맞는지 의문이다. 특히 HACCP 인증을 위해서는 많은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감당할 농가는 별로 없다. 미국과 유럽 등 서구에서는 농업과 가공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나라는 농가당 평균 1.5ha 농지를 소유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인증 자체가 맞지 않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제규격에 의해 가공된 농산물을 인정하기 때문에 학교급식 등 에 납품하기 위한 농산물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농민의 <생물다양성 수호권>의 평가 결과 대부분의 권리 항목은 낮게 나왔다. 전체 4개의 세부 권리 항목 가운데 '생물다양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발전시킬 권리'만 3.5점으로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다른 항목은 모두 낮게 나타났다. 세부 평가 결과를 보면, '초국가 적 기업이 만든 인증제를 거부할 권리'가 2.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초국가적 기업이 만든 인증제에 대한 농민들의 강한 거부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생 물다양성을 위협하는 특허물(작물, 식품, 의약품)을 거부할 권리'가 3.0점으로 낮게 나타났 다. 이것 역시 다국적기업에 의해 확산되고 있는 GM작물과 GM농산물에 대한 농민들의 강한 거 부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GMO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내포신도시에서 발생한 LMO 유채 식재는 지역 내에서 큰 논란을 야기했다. 정부의 검역기능이 허술해 발생하는 GM종자와 생물체의 유입으로 인해 유전자오염 발생 가능성이 높아가면서 농 민들의 반감과 경계심은 높아가고 있다.

<생물다양성 수호권>에 대한 권리 수준은 낮지만 이에 대한 향후 중요도 평가는 높게 나타 났다. 4개 세부 권리 항목에 대한 향후 중요도 평가 결과, '초국가적 기업이 만든 인증제를 거부할 권리'가 9.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초국가적 기업이 만든 인증제에 대해 농민들 은 앞으로도 강하게 거부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나머지 세 가지 권리항목도 모두 9.0점 이상의 중요도를 보여줬다. '생물다양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발전시 킬 권리'는 9.2점으로 높은 중요도 수준을 보였고,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특허물(작물, 식품, 의약품)을 거부할 권리'도 9.1점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생물다양성 을 수호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세부 권리 내용	현재 평가 점수 (0-10점) (A)	향후 중요도 점수 (0-10점) (B)	オ } の] (B-A)
1. 생물다양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발전시킬 권리	3.5	9.2	5.7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특허물(작물, 식품, 의약 품)을 거부할 권리 	3.0	9.1	6.1
 농민공동체 소유의 상품, 서비스, 자원, 지식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거부할 권리 	3.3	9.0	5.7
4. 초국가적 기업이 만든 인증제를 거부할 권리	2.8	9.3	6.5

<표 11> <생물다양성 수호권>의 실태 및 향후 중요도 평가

이와 같은 결과는 인터뷰조사에서도 나타났다. 홍성의 ②오*는 "국가단위에서 움직이는 인 증제도와 특허, 지적재산권 등은 농민의 힘으로 막기란 쉽지 않다. 너무 비싼 인증제도가 농 민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고 응답했다. 초국가적 기 업이든 국가든 인증제도 자체가 절대적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거부하기란 거의 어려운 측면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증을 위해 농민들은 많은 자금을 써야하기 때 문에 인증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부여의 ⑧신*연, 당진의 ⑩김*봉, 공주의 ⑫강*야는 "생물다양성 수호에 대한 인식이 사실 지금은 낮지만 향 후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향후 이에 대한 권리를 강력 히 보호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10) 환경 보존권

농민들은 지역에서 살면서 이웃과 함께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농사일 하나만으로도 어려운 상황인데 지역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과 싸워가면서 살아 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농민들의 영농활동을 침해하는 것은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환경의 파괴이다. 현재 농촌에는 각종 개발과 유해 환경시설의 입지로 인해 농 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 국가 혹은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도로 건설과 산업단지의 입지로 인해 농민의 영농활동은 위축되어 가고 있다. 또한 개별 입지로 농촌 구석구석으로 들 어온 기업들 가운데에는 환경오염을 일으키거나 유발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도 곳곳에 산재하 고 있다. 또한 공장형 축산시설들의 입지로 수질오염과 악취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역들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각종 개발사업과 시설의 입지가 지역주민들에게는 알려지지 않고 진 행되다가 사업이 거의 확정단계에 되어서나 공개되어 주민들이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만든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농민과 지역주민들의 분노와 반발이 더 크게 나타나기도 한다. 앞서 <농민의 기본권>과 <정보 획득권>에서도 어느 정도 설명했듯이 농민들은 정부의 정책과 정, 특히 개발사업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면서 농민의 환경 보존권은 심각하게 훼손되 는 사례가 많다. 도로 건설, 산업시설의 입지, 공장식 축산시설의 입지 등 농민들의 영농활동 과 주거환경에 큰 영향을 끼칠 사업일수록 농촌주민들에게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 농민의 <환경 보존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기도 하지만 이에 대한 거부권도 쉽지 않는 게 현실 이기도 하다.

농민의 <환경 보존권>에는 모두 5개의 권리 항목이 있다. 이에 대한 평가 결과 '토지 처분 에 대해 보상 받을 권리'가 4.8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을 뿐 나머지는 모두 낮게 나타났다. 그 가운데 '환경파괴에 대해 소송하고 보상을 청구할 권리'는 3.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환경 파괴에 대해 소송하고 보상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 다. 사실 환경피해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피해 내용과 정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보상을 청구하기도 쉽지 않다. 특히 개인이나 지역주민이 큰 기업이나 기관을 상대로 환경피해를 입 증하고 보상을 청구하는 일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시민단체 혹은 공적 영역에서 이에 대한 협력과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⁹⁾ 보상에 대한 청구권 다음으로는 '환경 파괴의 모든 형태의 착취를 거부할 권리'가 3.3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역으로 환경 파괴로 인한 모든 형태의 착취에 대해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환경 보존권>에 대한 향후 중요도 평가 결과 역시나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가질 권리'가 9.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만큼 농민들도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원하고 있 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농민의 지식에 따라 환경을 보존할 권 리', '환경 파괴의 모든 형태의 착취를 거부할 권리', '환경파괴에 대해 소송하고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모두 9.3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⁹⁾ 청양군 강정리사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강정리 주민은 인근 폐기물처리업체의 입지로 오랜 동안 피해를 입어 이에 대해 대 항해 왔다. 직접 항의도 하고 행정기관에 호소도 했지만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이후 강정리사태는 시민단체가 지원하 면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시민단체가 강정리주민을 대신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청양군과 충남도에 제 안했다. 특히 충남도는 시민단체의 안을 받아들어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입장 등이 달라 행정기관의 협력은 잘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들의 피해는 더욱 가중 되었다. 그래서 주민들은 다시 행정기관을 찾아 항의했고 이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는 주민들과 함께 행정기관이 더 적극적으 로 나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압박했다. 그래서 최근 충남도도 강정리 사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암튼 청양 군 강정리사태는 농민의 <환경 보존권> 차원에서도 깊게 논의해 볼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세부 권리 내용	현재 평가 점수 (0-10점) (A)	향후 중요도 점수 (0-10점) (B)	ネトロ] (B-A)
1.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가질 권리	4.3	9.5	4.2
2. 농민의 지식에 따라 환경을 보존할 권리	4.2	9.3	5.1
3. 환경 파괴의 모든 형태의 착취를 거부할 권리	3.3	9.3	6.0
4. 환경파괴에 대해 소송하고 보상을 청구할 권리	3.2	9.3	6.1
5. 토지 처분에 대해 보상 받을 권리	4.8	8.9	4.1

<표 12> <환경 보존권>의 실태 및 향후 중요도 평가

농민의 <환경 보존권>에 대한 인터뷰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은 환경 보존은 중요한 문제이나 농촌현장에서 해결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아산의 ❹박*우는 "중요한 문제이나 해 결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응답했고 홍성의 ❶강*주는 "그럴 여유가 없다."고 응답했다. 홍성의 ❷오 *는 "농민이든 누구든 환경 파괴에 대해 소송하고 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해 결해 나가는데 너무나 큰 노력과 희생이 따른다. 토지처분 보상도 마찬가지다. '농민변호 사'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응답했다.

최근 들어, 예산과 홍성, 부여 등에서 환경운동 관련 단체가 성립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 고 할 수 있다. 당진의 ⑩김*봉이 "농민들 스스로 환경을 보호하고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한 다."고 말한 것처럼 지역의 환경 보존은 농민과 지역주민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

(11) 결사, 의견, 표현권

농민들에게도 농민 스스로의 권익증진을 위해 결사권이 주어진다. 우리나라에서 독재와 군 사정권 시기 관제에 의한 농민조직이 조직되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 농민 자신의 권익증진을 위한 자조적인 조직은 민주화 시기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전국여성농민회연합회, 전국농민회 총연맹, 가톨릭농민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많은 농민조직이 민주화 과정을 겪으면 서 탄생했고 정부의 각종 농업, 농촌, 농민 정책에 대해 발언권을 가져왔다. 불합리한 정부정 책에 반대성명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집단적 항의집회를 통해 의사를 표현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농민단체, 특히 민주화 시기 조직된 농민단체의 경우 정부와 많은 갈등과 마찰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집회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많 은 농민단체 대표들은 구속되는 경우도 많았고 관련 단체 역시 탄압을 받기도 했다. 그러한 경향은 지금도 이어져 정부는 농민단체를 협력의 대상보다는 경계의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비근한 예로, 지난 2015년 11월, 서울 광화문에서 경찰은 쌀값폭락 등 농정실패에 항의하는 농민들과 시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쏘았고 이 과정에서 물대포를 맞은 전남 보성에서 올라온 백남기 농민은 쓰러졌다. 그리고 병원 입원 1년 후 그는 결국 사망했다. 정부는 백남기 농민 의 사망원인을 숨기다가 결국 정권이 바뀐 후 실토하기도 했다. 또한 2016년 겨울, 쌀값폭락 과 국정농단에 항의하기 위해 트랙터를 몰고 서울로 향했던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전봉준투 쟁단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결국 국가인권위원 회에 제소되어 부당한 제지였다는 것으로 판명되었지만 암튼 농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위압과 경계가 어떠했는가를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농민의 <결사, 의견, 표현권>는 다음과 같이 모두 5개의 권리 항목이 있다. 이에 대한 평가 결과, '자신의 관습, 언어, 문화, 종교, 문학, 예술로 표현할 권리'가 5.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나 결사체를 형성하고 가입할 권리'와 '억압에 저항하고 권리 보호를 위해 평화적인 직접 행동에 호소할 권리'가 각각 4.9점, 4.8점으로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농민은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단체에 가 입하고 호소할 권리는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자신의 권리 요구와 투쟁이 범죄시 되지 않을 권리'는 상대적으로 낮아 여전히 농민의 권리 요구 활동이 농민 스스로도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결사, 의견, 표현권>의 향후 중요도 평가에서는 '결사의 자유와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표현할 권리'와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나 결사체를 형성하고 가입할 권리'가 모두 8.9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농민의 권익과 친목 도모를 위해 다양한 조직을 결사하고 참여할 권리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자신의 권리 요 구와 투쟁이 범죄시 되지 않을 권리'가 8.7점으로 높았다. 농민시위에 대해 지역에서는 늘 경계와 감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즉, 농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활동을 일부 지역에서 는 범죄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경계와 감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할 것이다.

세부 권리 내용	현재 평가 점수 (0-10점) (A)	향후 중요도 점수 (0-10점) (B)	치이 (B-A)
1. 결사의 자유와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표현할 권리	4.3	8.9	4.6
2.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나 결사체를 형성하고 가입할 권리	4.9	8.9	4.0
3. 자신의 관습, 언어, 문화, 종교, 문학, 예술로 표현할 권리	5.5	8.3	2.8
4. 자신의 권리 요구와 투쟁이 범죄시 되지 않을 권리	4.3	8.7	4.3
 5. 억압에 저항하고 권리 보호를 위해 평화적인 직접 행동에 호소할 권리 	4.8	8.6	3.6

<표 13> <결사, 의견, 표현권>의 실태 및 향후 중요도 평가

농민의 <결사, 의견, 표현권>에 관한 세부 응답에서 응답자들은 농민들의 결사와 의사 표현 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했다. 아산의 ❸이*희는 "결사, 의견, 표현권은 정치의 문제와 같다. 민주주의 발전과정에 따라 농민인권의 보호, 보장 문제 도 연동될 것 같다."고 말했고, ❹박*우는 "농민의 권리의식과 자신의 불이익을 표현할 권 리는 형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또한, 공주의 ⑫강*야도 "정부 성향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다소 억압받는 수준이 다르나 기본적으로 헌법정신에 의거 해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즉, 농민이 불이익을 당할 때 이를 표현할 제도적 장치는 보장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농민들의 이러한 활동이 결과적으로 이렀다할 성과를 얻지 못해 무력감을 느 낀다는 응답도 많았다. 홍성의 ❶강*주는 "결사를 하나 결과에 반영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무기력하다."고 응답했다. 많은 조직이 만들어지고 농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많은 조직 활동 을 해도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어 무기력하다는 것이다.

(12) 정의에 대한 접근권

농민의 권리 가운데 마지막 권리는 정의에 대한 접근권이다. 이는 농민이 영농활동 혹은 일 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권리 침해에 대해 어느 정도 법률적 지원과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권리이다. 앞서 <환경 보존권>에서 설명했듯이 농민은 정부의 개발사업으로 인 해 반강제적으로 토지를 수용당하는 경우도 많고, 환경유해시설과 산업시설의 입지로 인해 영 농활동과 건강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고, 공장형 축사의 입지로 수질악화와 악취로 건강과 주거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

뿐만 아니라 영농활동 과정에서도 종종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다. 불량종자 구입으로 인한 피해, 중간유통상의 '갑질'로 인한 피해, 풍수해와 조수해로 인한 피해, 농기계의 운 전과 조작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피해 등 그 사례는 무수히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 처럼 많은 피해 사례에서 농민이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 보상을 받기란 쉽지 않는 일 이다.

농민의 <정의에 대한 접근권>에 대한 세부 평가 항목은 두 가지이다. 조사 결과 두 권리 항 목 모두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두 권리 항목 가운데 첫 번째인 '권리가 침해될 경우 효과적 인 구제책을 가질 권리'는 3.8점으로 낮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법률적 지원을 받을 권리' 는 4.3점으로 나타났다. 향후 중요도 평가에서도 각각 8.8점과 8.7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 민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효과적인 구제책을 가질 권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에 대한 권리 증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세부 권리 내용	현재 평가 점수 (0-10점) (A)	향후 중요도 점수 (0-10점) (B)	オ}०] (B−A)
1. 권리가 침해될 경우 효과적인 구제책을 가질 권리	3.8	8.8	5.0
2. 법률적 지원을 받을 권리	4.3	8.7	4.3

<표 14> <정의에 대한 접근권>의 실태 및 향후 중요도 평가

농민의 <정의에 대한 접근권>에 대한 인터뷰조사에서는 농민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실 질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를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아산의 ③이*희는 "농민과 농민단체가 억울할 때 지원·구제해주는 곳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④박*우는 "정의에 대한 접근의 권리는 형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된다."고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공주의 ⑫강*야는 "농민들이 정 의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좀 더 자 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농민에 대한 권리 침해가 외부로부터 강하게 들어오는 경우 도 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보이지 않는 많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각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3) 전체 농민권리 실태 분석 및 평가

충남도 농민인권 실태 분석과 평가를 위한 조사항목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2013년 마련한 <농민권리선언>의 12개 조항과 세부 항목을 참고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농민권리 선언>의 12개 항목 전체에 대한 현재 평가 점수와 향후 중요도를 비교하고 그 의미를 해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충남도 농민인권 실태에 관한 12개 권리 항목 중에서 가장 낮은 항목은 생물다양성 수호권으로 3.2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농산물 가격과 시장 결정권, 농업가치의 보호 권, 환경 보호권이 모두 4.0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들 권리 항목은 현재 충남도 농민권리의 보장 수준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생명권과 표준 생활권, 농업생산 수단 보유권 등 은 각각 5.0점, 4.9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	현재 평가 점수 (A)	향후 중요도 점수 (B)	ネトゥ] (B-A)
① 농민권	4.2	9.1	4.9
② 생명권과 표준 생활권	5.0	8.6	3.6
③ 토지와 지역의 보존권	4.8	8.8	4.0
④ 종자, 전통지식, 영농 활동권	4.7	8.7	4.0
⑤ 농업생산 수단 보유권	4.9	8.5	3.6
⑥ 정보 획득권	4.4	8.9	4.5
⑦ 농산물 가격과 시장 결정권	4.0	9.1	5.1
⑧ 농업가치의 보호권	4.0	9.0	5.0
⑨ 생물다양성 수호권	3.2	9.2	6.0
⑩ 환경 보호권	4.0	9.3	5.3
⑪ 결사, 의견, 표현권	4.8	8.7	3.9
⑫ 정의에 대한 접근권	4.1	8.8	4.7

<표 15> 전체 농민인권 실태 및 향후 중요도 점수 평가

둘째, 12개 권리 항목에 대한 향후 중요도 평가에서 환경 보호권이 9.3점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충남도 농민은 향후 환경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생 물다양성 수호권 9.2점, 농민의 기본권과 농산물 가격과 시장 결정권이 동등하게 9.1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충남도 농민은 앞으로 이들 중요도가 높은 권리에 좀 더 중요성을 두기 때 문에 향후 정책 수립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농민인권에 대한 현재와 향후 중요도 점수 간 차이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향후 농민인권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즉, 현재 점수가 낮은데 향후 중요도가 높다는 것은 현재 해당 권리 보장 수준이 낮으나 향후 이에 대한 요구도가 높기 때문에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수 있다.

분석 결과, 현재 평가와 향후 중요도 간 차이는 생물다양성 수호권이 6.0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환경 보호권이 5.3점, 농산물 가격과 시장 결정권이 5.1점, 농업가치의 보호권이 5.0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물다양성 수호권이 현실과 향후 중요도 간 차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의외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세부 권리 항목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 보호권의 세부 권리 항목의 현재와 향후 중요도 차이를 보면,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특허물(작물, 식품, 의약품)을 거부할 권리'가 6.1점, '초국가적 기업이 만든 인 증제를 거부할 권리'가 6.5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들은 GMO와 같이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특허물에 대해 강한 거부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HACCP 등 초국가적 기업(단체) 등에 서 만든 인증제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충남도 농민인권 보호 수준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권리에 대해 향후 충남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농민인권 현재 실태와 향후 중요도 격차

앞선 분석에서는 농민인권 12개 항목과 세부 권리 내용을 평가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여기에서는 다시 12개 항목의 세부 권리 내용 가운데 현재 실태와 향후 중요도 점수 간 격차 가 큰 항목을 정리했다.(<표 16> 참조) 현재 실태와 향후 중요도 점수 간 격차가 크다는 것은 향후 농민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는 이러한 권리 내용에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는 명 제가 도출된다.

정리 결과 <농민권>에서는 식량주권의 권리(5.7)를 비롯해 2개의 권리가 선별됐고, <생명권 과 표준 생활권>에서는 적절한 소득을 보장 받을 권리(5.5)를 비롯해 3개의 권리가 선별됐다. 또한, <농산물 가격과 시장 결정권>에서는 공정한 가격을 획득할 권리(6.3)를 비롯해 5개의 권리가 선별됐고, <생물다양성 수호권>에서는 초국가적 기업이 만든 인증제를 거부할 권리 (6.5)를 비롯해 4개의 권리가 선별됐다. 이러한 권리 항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했 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않겠지만 아무튼 이들 권리 항목은 향후 농민인권 증진에 중요한 지표 로 작용할 것이다.

<표 16> 농민인권 현재 실태와 향후 중요도 점수 간 격차

항목	세부 항목별 현재 실태와 향후 중요도 점수 차이(5.0 이상 항목)
① 농민권	토지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구상, 의사결정, 실행, 모니터링에 참여할 권리(5.1), 식량주권의 권리(5.7)
② 생명권과 표준 생활권	적절한 소득을 보장 받을 권리(5.5), 건강하고 충족한 음식과 전통 음식 유지 권리(5.0), 여성농민의 가정폭력, 성적, 언어적, 심리적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5.0)
③ 토지와 지역의 보존권	-
④ 종자, 전통지식, 영농 활동권	농업의 산업모델을 거부할 권리(5.3)
⑤ 농업생산 수단 보유권	정부의 농업예산의 계획, 집행, 적용에 관해 참여할 권리(5.3)
⑥ 정보 획득권	-
⑦ 농산물 가격과 시장 결정권	생산물의 가격을 결정할 권리(5.8), 공정한 가격을 획득할 권리 (6.3), 노동에 대한 공정한 임금 획득과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권리(5.7), 수확물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보장받을 권리(5.6), 식량주권 보장을 위해 공동체를 기반한 상업화를 발전시킬 권리 (5.4)
⑧ 농업가치의 보호권	농업의 가치를 파괴할 수 있는 개입을 거부할 권리(6.0), 농민의 정신성을 표현할 권리(5.3)
⑨ 생물다양성 수호권	생물다양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발전시킬 권리(5.7), 생물다양성 을 위협하는 특허물(작물, 식품, 의약품)을 거부할 권리(6.1), 농민공동체 소유의 상품, 서비스, 자원, 지식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거부할 권리(5.7), 초국가적 기업이 만든 인증제를 거부할 권리 (6.5)
⑩ 환경 보호권	농민의 지식에 따라 환경을 보존할 권리(5.1), 환경 파괴의 모든 형태의 착취를 거부할 권리(6.0), 환경파괴에 대해 소송하고 보상 을 청구할 권리(6.1)
11 결사, 의견, 표현권	-
12 정의에 대한 접근권	권리가 침해될 경우 효과적인 구제책을 가질 권리(5.0)

Ⅳ. 결론 및 제안

본 연구에서는 농민인권 증진을 위해 국내외 농민인권 관련 논의를 파악하고, 충남도 거주 농민인권 관련 농민, 지역활동가, 연구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농민인권 실태와 향후 증진 방향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농민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다음 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농정의 틀을 '사업'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의 전환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농정은 생산주의 농정에서 벗어나 농촌의 다양한 기능을 강조하는 농정으 로의 전환해 왔으나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현재 논의 중에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 <농민권리선언>은 우리나라 농정에도 큰 시사점을 주고 있 다. 즉, 농정의 방향이 농업과 농촌 관련 사업 위주의 정책에서 농민이라는 사람 중심의 정책 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 셈이다.

둘째, 농민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실천이 필요하다.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동학농민혁명 선언 이래 많은 역사의 고비에서 농민들은 농업, 농촌 의 가치와 농민의 권리를 선언하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정치적 역량도 부족했고 각 단체별 선언 내용과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농민의 권리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하지만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논의 중인 <농민권리선언>은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가 무엇이고 이들의 가치와 권리가 어떠해야 하며 향후 이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명 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농민인권에 관한 이러한 유엔 차원의 기준 설정은 향후 우리나라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에도 체계적인 계획과 실천이 요구된다.

셋째, 농민인권을 본격적으로 인권 논의의 장으로 확대해야 한다.

기존의 인권논의는 보통 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난민, 이주자, 성소수자 등 으로 농민은 그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농민인권도 인권 논의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그 중요한 이유는 농민, 농촌, 농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 류미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엔이 인류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내 놓은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의 많은 부분은 농민, 농촌, 농업의 문제와 관련이 된다. 또 한 유엔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기후변화협약에서도 농민, 농촌, 농업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이처럼 유엔 차원에서 농민인권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만큼 국내 각급 인권 관련 단체와 학계, 기관에서도 인권 논의에서 농민인권을 중요 의제로 다뤄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농민인권 증진을 위한 법과 제도적 틀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많은 인권관련 법과 조례, 규정 등에서 농민인권에 관한 내용은 배제되어 있는데 농민 권리선언을 계기로 농민인권 관련한 법과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권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나 농민인권에 관한 내용은 생략되고 있는 상태이다. 향후 유엔 차원의 <농민권리선언>이 선포된다면 정부 차원의 인권계획에 농민인권 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충남도의 경우 2014년도에 수립된 <충남도 인권정책 기 본계획>에 농어민 권리 증진이 포함되기도 했다. 따라서 농민인권이 법과 제도적 틀 내에서 보장받기 위해서는 우선 인권관련 법과 조례, 규정, 계획 등에 농민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민단체의 자율적 조직 구성과 활동이 필요하다.

농민인권 논의를 체계적으로 확산시키고 농민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농민 인권 증진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농민인권센터'(가칭) 설립¹⁰⁾, 농민단체 및 조직 내 인권교육 등이 필요하다.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또한 '인권입국(人權立國)'

 ¹⁰⁾ 충남인권센터는 충남도 도민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지난 2016년 12월에 설립되었다. 주로 행정조직 내 인권침해 에 관한 상담과 조사, 그리고 주로 도청 각 부서에서 마련한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농민인권에 관한 사업은 미흡한 상태이다.

을 표방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사람중심의 정책을 펴나갈 것을 선언했 다. 인권중심의 국정기조를 천명한 것이다. 충남도는 이미 2014년 10월 13일 <충남도민 인권 선언>을 선포했다. 이는 지난 20세기 국가와 행정, 효율과 생산의 가치가 중심이 된 시대를 마감하고 주권자가 주인 되고 사람이 가치인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나아가 충남도와 충남인권센터는 인권 중심 도정 실천의 한 방안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인권 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인권교육은 무엇보다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농민인권 중진을 위해 농민단체의 자율적인 교육과 활동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고승희·이수철. 2015. 『충남도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충남연구원 현안과제.

- 김득희·황경열. 1998. "농촌과 도시 노인의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건강상태간의 관계연 구", 『특수교육연구』21: 95~126.
- 박경철. 2014. 『충남도 농촌주민 기본소득제 도입 방안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전략과제. _____. 2015. "충남 농업인인권 현황과 과제", 『열린 충남』겨울호: 29~33.
- 박대식·마상진. 2007. "도시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지수화 방안 연구". 『농촌경제』, 30(4): 31~55.
- 박민선·허미영. 2005. "한국농가의 성별 불평등과 변화가능성: 가족경영협약서 분석을 중심으 로", 『농촌사회』 15(1): 103~132.
- 박신규·정은정. 2010. "여성농민의 사회적 정체성 형성과 여성농민운동의 발전: 전국여성농민 회총연합(전여농)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20(1): 89~129.
- 석소현·김귀분. 2008.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 비교 연구". 『정신간호학 회지』 17(3): 311~321.
- 성태규 등. 2014.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2015~2019)』, 충청남도.
- 아네트 아울레리 데스마레이즈, 박신규 등 옮김. 2011. 『비아 캄페시나: 세계화에 맞서는 소 농의 힘』, 한티재.
- 윤수종. 2010. "1970년대 이후 주류 농민운동의 형성과 도전". 『농촌사회』 20(1): 47~87.
- 이수미. 2016. 농민의 권리, 유엔농민권리선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제242 이슈보고 서.
- 최선미·홍준형. 2016. "도시와 농촌 노인들의 자살 영향요인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한국 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겸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1~30.
- Golay, C. 2013. Legal Reflection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Geneva Academy.
- Golay, C. 2015. Negotiation of a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Academy in-Brief No. 5. Geneva Academy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

La Via Campesina. 2009. Declaration of Rights of Peasants - Women and Men.

- Sangkyung, L. How can the Rol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Autonomous Entities be Functionally Divided in Order to Better Protect and Enhance Human Rights in Korea?. 『세계헌법연구』 21(1): 165~195.
- UN Human Rights Council. 2012. Final Study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on the Advancement of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 UN Human Rights Council. 2013.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 UN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2016. Opening statement of Ms. Jyoti Sanghera in Third session of Working Group on a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Geneva, 17 May 2016).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humanrights.go.kr/

- 밤하늘이야기 블로그, "국제농민인권대회를 다녀와서", ttp://blog.daum.net/qkagksmf7/38
- (사)공익법센터 어필 홈페이지, "농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엔 워킹 그룹(Park 1~2)", http://www.apil.or.kr/1381

비아 캄페시나_La Via Campesina 홈페이지, http://viacampesina.org/

유엔인권이사회 홈페이지, http://www.ohchr.org/en/hrbodies/hrc/pages/hrcindex.aspx

- 55 -

- 토론문4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통상과
- 토론문3 외교부 인권사회과
- 토론문2 정은주 한국국제협력단 인권경영 전문가
- 토론문1 이무진 전농 광주전남연맹 정책위원장

[토론문]

01

[토론발표1]

『농민권리선언 유엔 인권이사회 통과와 대한민국 농정』

이무진

전농 광전연맹 정책위원장

유엔 농민 권리선언 유엔 인권이사회 통과와 대한민국의 농정

전농 광주전남연맹 정책위원장 이무진

지난 2018년 9월 28일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찬성 33표, 기권 11표, 반대 3표로 <유엔 농민 농촌노동자 권리선언에 관한 결의안>이 통과됐다. 지 비아캄페시나가 주축이 되어 지난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투쟁했던 국제사회에서의 농민과 농촌의 기본적 권리 및 농민 에 대한 인권적 개념을 12월 유엔총회에서 회원국들의 투표를 통해 채택되면 농민과 농촌 노 동자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확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침내 마련하게 된다.

이 소식을 접하며 초국적 자본의 이윤추구가 우선인 신자유주의 체계의 전면에서 농민의 기 본적 권리 쟁취를 위해 투쟁하고 농민 대중과 함께 하고 있다는 전농 지역단위 간부로서 죄스 러움과 농민·농촌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바뀌지 않은 대한민국 정부의 인식에 화가 났다는 것 이 솔직한 심경일 것이다.

죄스러움은 올해 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진행된 비아캄페시나 농민인권선언 워크숍 참 석을 통해 알게 된 전 세계 농민들이 농민으로서의 삶과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토지, 종자, 정부, 정의, 여성과 남성간의 평등 등 모든 권리를 유엔이라는 국제적 기구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또한 얼마나 지속적인 투쟁을 진행했을까 하는 자기 반성적 창피함이다.

또한 전농을 비롯해 농민의길 차원에서 꾸준히 활동은 전개했다고는 하지만 그 조직의 핵심 활동가들조차 <유엔 농민 농촌노동자 권리선언>에 대한 인식은 미미한 실정이고, 정부 및 학 계 등 관계자들과 농민 당사자조차도 농민 권리를 위한 국제법적 논의가 중대한 국면을 맞이 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창피함이다.

화가 나는 것은 정부가 보인 이 선언에 대한 인식의 천박함과 대응의 방식이다.

대한민국 정부 대표는 <유엔 농민 농촌노동자 권리선언> 논의가 진행 중인 회의장에서 발언 은커녕 회의장에 나타나지도 않았다고 전해진다.

촛불정부라고 스스로 정체성을 규정한 문재인정부에서 과거 17년 동안 진행되었던 것이 그 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농민과 농촌 사람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더 이상 지탱하기조차 어려운 농민, 농촌의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대책과 식량주권에 대한 국가정 책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이제는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특히 외교부가 기본 입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아야 한다며 소통창구 역할만 할 뿐이라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주도적 의사 표시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7년이란 기간 동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논의되었던 사안이라면 최소한 당사자인 농민들과 는 국내에서의 의견 수렴 과정 등은 진행했어야 정부다운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무관심과 무성의가 단순히 외교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농민과 농업에 맞는 기준을 제시해야 할 농식품부 주무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농업통상과 역시 농민권리선언은 전반적으로 남미 원주민들이 그 배경이고 산업국 가의 소농을 위한 권리로 볼 수 없다며 국내법과 상충되는 면들이 많아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도 무작정 찬성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신을 계승하는 촛불정부라고 대통령 스스로가 밝혔다. 촛불정신이 무엇인가? 국민의 기본권리가 지켜지는 사회와 국가를 만들자는 것이 촛불정신 아닌가?

그렇다면 외교부와 농식품부 관료들의 <농민권리선언>에 대한 관점과 대응 논리는 현 정부의 정체성과도 맞지 않는 것이며 도리어 심각한 훼손을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설령 현재 진행 중인 <농민권리선언>이 남미와 동남동아시의 원주민들이 그 배경이라는 정부 말에 100% 수긍하더라도 선언문 안에 담겨 있는 농지, 종자, 생물다양성 등이 자본에 종속되 는 것을 국가가 농민의 기본권리로 생각해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는 곧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의 지속성을 유지·강화시켜 식량주권을 지켜내면서 동시에 국민 전체의 이익이 될 것이라는 권리선언의 핵심 내용이 현재 우리 농업, 농촌과는 괴리가 큰 것인가.

정부가 말하는 산업국가 소농들의 현재 삶은 다 말하지 않겠지만 한국농업의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본다면,

하나, 종자에 대한 권리는 진작에 기업에 빼앗겼으며

하나, 토지 또한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법칙이 무너져 투기의 장이 되고 농민들은 신소 작농의 모습을 띄고 있으며

하나, 농민 하위 20%는 사회적으로 최극빈층에 속하며 전체 농민은 도시민과 소득 격차가 2015년 기준 64%로 벌어져 있어 대다수의 농민이 빈곤화 돼 가고 있다.

하나, 농산물 가격은 매년 안정되지 못하고 폭락을 되풀이 하고 있다.

국경과 관계없이 또는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대대로 살아왔던 삶의 터전인 농토를 지키려는 것에서부터 설령 <농민인권선언> 논의가 출발하였다 하더라도 과연 정부 말대로 '산 업화된 나라의 농업·농촌'인 대한민국과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가?

유엔 농민권리 선언은 이제 뉴욕 유엔 총회 표결만을 남겨 두었다. 당장 올해, 또는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강제적 이행 규정은 아니지만 세계가 공히 인정하고 노력해야 하는 지침서와 같은 역할 을 할 것이고 이 선언이 잘 지켜지는가에 대한 정기적이고 국가적인 점검도 유엔 차원에서 진 행될 것이다.

더 이상 이 선언이 산업화된 우리나라와 맞지 않다는 소모적 논쟁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이 선언이 담아내고자 하는 농민에 대한 기본 권리와 그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놓고 정부와 농민, 학계 등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이 바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정부, 촛불정부의 모습일 것이다.

또한 성과중심, 규모화 중심으로는 더 이상 나아갈 방향을 찾지 못하는 임계치에 도달한 한국 농정에 농민 개개인의 삶의 행복과 권리가 지켜지는 농정으로의 대변환이 시작될 수 있을 것 이다.

02

[토론발표2]

『국가의 일반적 의무에 관한 동 선언 2조를 중심으로』

정은주

한국국제협력단 인권경영 전문가

국가의 일반적 의무에 관한 동 선언 2조를 중심으로

정은주 (KOICA 인권경영 전문가)

🗆 동 선언의 성격

- (국가 간 규율 관계를 넘어 국제사회에 농민의 권리를 요청하고 합의) 동 선언은 농민과 농 촌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국제사회가 존중하여야 할 공통의 규범인 국제인권법 에 뿌리를 두고, 농민 인권의 존중을 국제사회의 의무로 확인. 인민(Peoples)이 국제사회에 스스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보장.
- (국제권리장전에 뿌리를 둠) 동 선언의 형식은 국제권리장전인 「세계인권선언」,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의 내용과 형식 에 토대를 둠(예. 조항 순서 유사). 그 외 인권협약과 규범(대표적으로 발전권 선언이 포함 됨)들이 확인한 권리의 내용과 원칙을 준수할 것을 명시.
- (선언[Declaration]의 의미) 선언은 기타 국제인권조약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향후 국제사회의 발전 수준에 따라 관습과 시민의 보편정서로 자리매김하는 강력한 인권 담론. 새롭게 명명되고 확립된 농민, 농촌노동자 권리 실현을 위해서는 각 회원국(국가)의 '적절 한 조치'들에 따라 선언되고, 각국의 입법부가 확립한 법에 의해 효과적으로 보호되어야 함 (국제규범의 국내이행의 중요성).
 - * 세계인권선언: 국제조약법은 아니나 도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관습법. 세계인권선언 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의 탄생으로 발전. [cf) 원주민권리선언, 장애인권리선언, 인권옹호자 선언]

□ 동 선언 "제2조 국가의 일반적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논의

1.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입법, 행정 및 기타 적절한 조치"

- 적극적 차원 (자원투입과 구체적 정책이 필요한 인권)에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요청
 * 소극적 차원 (의도적으로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인권)
- 동 선언은 사회권 규약 2조의 내용과 형식에서 흡사함.
- "점진적 달성"의 의미는 실현(Fulfill)의 의무
 - * 경제·사회적 권리는 일거에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형편을 고려하여 조금씩 늘리자는
 식의 잘못된 해석 경계하여야 함.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progressively' 라는 말에는 국가가 국민의 최소한의 기본욕구를 충족시켜야 하고,
 그런 조처가 후퇴해서는 안 되며,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음. 즉,
 '전향적·지속적으로' 가 정확한 해석(조효제, 2016).
- "노인, 여성, 청년, 아동, 장애인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차별문제를 염두에 두고
 서....농민 농촌노동자의 권리와 특별한 필요에 각별한 주의...":

- 동 권리 실현을 위해서는 위 사람들로 명명되는 인권 취약 계층에 대한 차별문제를
 동시에 고려하고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 (예> 한시적 우호조치).
- "개인 및 집단... 자유롭고 효과적이며 유의미한 참여... 대표기구를 통한 성실한 협력":
 - ("집단"의 중요성): 개인 시민권의 청구를 넘어서, 동 권리의 실현에 '집단'이 의미 있게 참여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권리에 따른 의무의 부담자들은 대표기구를 통해 성실히 협력하여야 함.
 - (동 문장은 유엔 발전권 선언[1986] 2조 2의 내용에 토대): 발전권은 개개인들이 개 발(발전) 과정에 의미있게 참여하고, 그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의미.
 "(발전권 선언 2조 2 中): 국가들은, 발전과 그로 인한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 대한 전 인구와 <u>모든 개인들의 적극적이고 자유롭고 의미 있는 참여</u>의 기초 위에서 그들의 복지의 부단한 향상을 목표로 한 적절한 국가적 발전 정책을 공식화 할 의무를 가진 다."
 -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 요청): 농민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시장경제 중심 패러다임
 을 넘어서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농민의 민주적 발전 과정'이 구축되어야 동
 선언의 권리 실현이 보장될 수 있음을 기존 문헌의 전통에 따라 재확인.
- 4. "국가는.... 관련 국제 협정 및 기준들을 다듬고 해석"
- ("입법, 행정 및 적절한 조치"로 확인되어야) 국제규범의 국내이행의 중요성 -> 동 선언에서 보장하는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입법, 행정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통해 법·제도 간 정합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할 중요성 확인.
- 5. "개인과 민간단체, 초국적 기업과 기타 사업체 같은 비국가 행위자들이..."
 - 농민권리 실현을 위한 의무의 주체(의무부담자)가 전통적으로는 '국가'였다면, 국 가에서 민간주체로 의무부담자의 역할이 확대되었음을 재확인 (국가만이 인권을 침해 하는 것도 아닌 현실을 반영하면서, 새로운 국제조약 탄생을 예고)
 - cf)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UNGPs, 2011)과 현재 UN에서 논의 중인 「기 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 농민의 길(La Via Campesina)이 적극적 으로 유엔 에드보커시 활동 주도
- 6.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
 - 서문에서의 발전권 선언에 대한 언급과 더불어 유엔 지속가능발전 2030 의제 실현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국제협력이 실천되어야 함을 강조.
 - a) 국제개발프로그램
 - b) 역량강화 지원
 - c) 과학기술 연구 및 협력
 - d) 개도국과 상호 합의된 기술 이전 및 경제 원조
 - e) 시장 기능 개선 및 시장정보에 대한 접근 촉진

□ 동 선언에서 언급된 주요 권리 구조

	상위 국제인권규범 (국제관습법)			
	세계인권선언 (1948)			
국제 인권 조약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ICCPR, 1966)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ICESCR, 1966)
권리의 구성	국가의 존중,보호,실현 의무, 국제사회 협력	시민·정치적 권리	농민,농촌노동자 권리이슈 (대상)	경제·문화·사회적 권리
유 농 농 도 권 선	서문 제1조. 농민과 농촌노동자의 정의 제2조. 국가의 일반적 의무 제27조. 유엔 및 국제기구의 책임 제28조. 일반사항	제3조. 평등, 차별금지, <u>발전에</u> <u>대한 권리</u> 제4조. 여성 농민과 농촌 노동자의 권리 제5조.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 제6조. 개인의 생명,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제7조. 이동의 지7조. 이동의 지7조. 이동의 지7조. 이동의 지유 제8조. 사상, 의견, 표현의 자유 제9조. 결사의 자유 제10조. 참여의 권리 자유 제10조. 참여의 권리 제12조. 사법 접근권	제11조. 생산,마케팅, 유통 관련정보에 대한 권리제15조. 적절한먹거리에 대한권리제16조. 적절한수입과 생계,생산수단에 대한권리제17조. 토지와기타 천연자원에대한 권리제18조. 안전하고깨끗하고 건강한환경에 대한 권리제19조. 종자에대한 권리제20조.생물다양성에 대한권리제21조. 물과위생에 대한 권리	제13조. 노동권 제14조. 일터에서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권리 제22조.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제23조. 모두가 최대 수준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 제24조.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제25조. 교육과 훈련에 대한 권리 제26조. 문화적 권리와 전통지식

🗌 향후 과제

- 국제 인권 규범으로서 가지는 동 선언의 의미와 중요성 인식
- 한국 농민, 농촌노동자 인권 현실에 대한 실태 조사
- 농민, 농촌노동자 인권 실현을 위한 "입법, 행정 및 적절한 조치"
- 선언에서 언급된 권리의 존중과 실현에 기초한 개발 패러다임 전환과 프로그램의 이행(다국
 적 기업의 의무 이행 강화 방안 고려)
- 시민사회·인권단체와 농민단체 간 협력 -> 동 선언 조항의 인권적 접근에 기초한 해석과
 시민운동의 저변 확대

[참고자료]

유엔 농민 농촌노동자 권리 선언 초안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제302호 이슈보고서

2018. 10. 24.

번역:

정성웅 농정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조영지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상임연구원 최민영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상임연구원



유엔 농민 농촌노동자¹¹⁾ 권리 선언 초안¹²⁾

유엔 인권이사회는,

자유, 정의 및 세계 평화의 기초로서 모든 인류의 천부적 존엄성과 가치 및 동등하고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유엔헌장에 천명된 원칙들을 상기하고,

세계인권선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 한 국제규약,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 한 협약, 아동권리협약,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협약, 국제노동기구 및 유관 국제기구에 의해 세계적 또는 지역적 수준에서 채택된 관련 규약들을 고려하며,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에 모든 인 류가 참여하고 기여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양도 불가능한 인권인 발전권과 발전에 관한 권리 선언을 재확인하고,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을 재확인하며,

모든 종류의 인권은 보편적이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상호관계하며, 상호의존적이면서 상호보완적이고, 공평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같은 자격과 같은 주안점을 가진 것으로 다뤄져야 함을 재확인하고, 특정 범주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다른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해 야 할 국가의 의무가 절대 면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상기하며,

농민 농촌노동자가 생계를 의존하고 있고 애착이 형성되어 있는 토지, 물, 자연과 농민 농 촌노동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와 상호작용을 인정하고,

또한, 전 세계 농민 농촌노동자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인류발전과 먹거리와 농 업생산의 기반이 되는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증진을 위한 공헌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를 비롯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발전목표를 달성하는데 핵심인 적절한 먹거리에 대한 권 리와 먹거리 보장에 대한 권리 확립을 위한 그들의 공헌을 인정하며,

농민 농촌노동자가 빈곤, 기아, 영양실조로부터 더 많이 고통 받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또한 환경파괴와 기후변화로 인한 부담으로부터도 농민 농촌노동자가 고통 받고 있다는 점 을 우려하며,

전 세계적으로 농민들이 고령화되고 청년들은 고된 농촌 생활과 부족한 유인으로 인해 갈수 록 농업을 등지고 도시로 이주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특히 농촌 청년들을 위해 농촌의 경 제 다양성과 농외 소득기회 창출을 개선할 필요성을 보다 더 인정하며,

강제로 퇴거해야 하거나 추방되는 농민 농촌노동자가 숫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에 경각

 ¹¹⁾ 여기서 농민 농촌노동자는 농업 외에도 자연과 직접적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어민과 목축민 등을 포괄하는 개념
 12) A/HRC/WG.15/5/3

⁽원문링크 : https://www.ohchr.org/Documents/HRBodies/HRCouncil/WGPleasants/Session5/A-HRC-WG.15-5-3.pdf)

심을 가지고,

또한, 일부 국가의 높은 농민 자살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며,

여성 농민과 농촌 여성들이 화폐가치화 되지 않은 경제부문 활동 등을 통해 가족의 경제적 생존과 농촌 및 국가 경제 기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들의 토지의 소유 및 사용권 을 비롯하여 토지, 생산자원, 금융서비스, 정보, 고용이나 사회 보장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이 거부 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나타나는 차별과 폭력의 희생자는 대체로 여성농 민과 농촌여성들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농촌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관련된 인권 의무에 따라 빈곤, 기아, 영양 실조를 퇴치하고, 교육과 건강의 질을 증진하며, 화학물질과 폐기물에 대한 노출로부터 보호 하고, 아동 노동을 근절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영세 어민 및 어업 노동자, 목축민, 임업인, 그리고 기타 지역 공동체를 포함한 농민 농촌 노동자가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 그들의 인권 및 토지 사용권을 지키고, 그들이 의존하고 있 는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보장하려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는 점을 보다 더 강조하며,

농촌 주민들이 토지, 물, 종자 및 기타 천연자원에 접근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는 점을 인정하고, 생산적인 자원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적절한 농촌 발전에 대한 투자의 중 요성을 강조하며,

자연적인 과정과 순환을 통해 적응 및 재생하는 생태계의 생체자연적 능력을 존중하는 것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 및 지역에서 어머니 대지로 언급되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자연을 지원 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방식을 실천하고 촉진하려는 농민 농촌노동자의 노력이 지지 받아 야 한다는 점을 확신하고,

세계 곳곳에서 농민 농촌노동자가 일할 수밖에 없는 위험하고 착취적인 조건들이 존재하며, 이 조건들은 일과 관련된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빈번히 거부하고 생활임금 및 사회 적 보호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토지 및 천연자원을 활용해 일하는 이들의 인권을 증진 및 보호하는 개인, 단체, 기관들이 자신들의 신체적 안위를 위협 및 침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쉽게 직면할 수 있다는 점 을 우려하며,

농민 농촌노동자는 대체로 폭력, 학대, 착취로부터 즉각적인 배상이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법원, 경찰관, 검찰관, 변호사들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는 점에 주목하 고,

인권의 향유를 저해하는 식품 투기, 먹거리 체계의 심화하는 집중화와 분배 불균형, 가치사 슬의 불균등한 권력관계를 우려하며,

발전권은 모든 인간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정치적 발전에 참여하고, 기여하며, 향유 할 수 있도록 부여된 양도 불가능한 인권이고, 이를 통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가 완전 히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두 개의 국제인권규약의 관련 조항에 따라, 모든 천연의 부와 자원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상기하고, 먹거리 주권 개념이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그들의 먹거리 및 농업체계를 규정할 권리와 인 권을 존중하는 생태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을 통해 생산된 건강하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먹거 리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다른 개인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의무가 있는 개인은 본 선언문과 국내법에서 인정 하는 권리들을 증진하고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과 관용, 대화, 협력을 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노동 보호와 일다운 일에 관한 국제노동기구의 광범위한 협약과 권고 사항을 상기하고,

생물다양성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공평하고 공정한 이익공유 에 관한 나고야의정서를 상기하며,

먹거리권, 토지 사용권,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권과 '식량과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 조약', '국가 식량 보장 차원의 토지, 어장 및 삼림 사용권에 대한 책임 있는 거 버넌스에 관한 자발적 가이드라인', '식량 보장과 빈곤 퇴치 차원의 지속가능한 소규모 어 업을 지키기 위한 자발적 가이드라인', '국가 식량 보장 차원의 적절한 먹거리에 대한 권리 의 점진적 실현을 지원하는 자발적 가이드라인'에서 다루는 여타의 농민의 권리들에 대한 유 엔 세계식량농업기구 및 세계식량안보위원회의 방대한 작업을 보다 더 상기하고,

농지개혁과 농촌 발전에 관한 국제회의의 결과와 그 때 채택된 농지개혁과 농촌발전을 위한 적절한 국가 전략 수립과 그것의 전반적인 국가 발전 전략과의 통합을 강조했던 농민헌장을 상기하며,

본 선언문과 관련 국제협정은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관점에서 상호보완적일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점증하고 지속적인 국제적 협력과 연대의 노력을 통해 인권 증진 시도에 상당한 진전을 이 루고자는 관점을 가지고 국제 사회의 헌신 속에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고자 결의하며

농민 농촌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더 강화하고, 이 문제에 대한 기존의 국제 인권 규범 및 기 준을 일관되게 해석하고 적용할 필요성을 확신하며,

다음의 농민 농촌노동자 권리 선언문을 엄숙히 채택한다.

제1조

 본 선언문에서 농민은 혼자서, 또는 다른 이들과 함께 연합하여, 또는 공동체로서, 생계 및/혹은 판매를 위한 소규모 농업생산을 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사람으로서, 전적으로는 아 니더라도 상당 수준으로 가족이나 가사노동 혹은 화폐가치화 되지 않은 방식으로 조직된 노동 에 의존하며, 토지에 특별한 의존성과 애착을 갖는 사람을 말한다.

 본 선언문은 재래식 혹은 소규모 농업, 농경, 목축, 유목, 어로, 영림, 수렵 또는 채집, 그리고 농업과 연관된 수공예 또는 농촌 지역에서의 유관 직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적 용된다. 또한, 그들의 부양가족에게도 적용된다.

3. 본 선언문은 토지에서 일하는 원주민과 원주민 공동체, 이동 방목, 유목 또는 반유목 공 동체, 그리고 위의 활동을 하지만 토지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4. 본 선언문은 이민법상 신분과 무관하게 모든 이주 노동자를 포함하여 플랜테이션, 농장, 산림, 수산양식장, 농산업체의 농장에서 일하는 임금 노동자와 계절 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

제2조

 국가는 모든 농민 농촌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충족시켜야 한다. 국가는 즉 각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본 선언문의 권리들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입 법, 행정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2. 노인, 여성, 청년, 아동, 장애인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차별문제를 다뤄야 할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서 본 선언문의 이행에 있어서 농민 농촌노동자의 권리와 특별한 필요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원주민에 관한 특별 법안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농민 농촌노동자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 및 정책, 국제 협정 및 기타 의사 결정 과정을 채택하고 시행하기에 앞서, 국가 는 다양한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는 권력 불균형을 고려하는 동시에, 관련한 의사 결정에 참가 하고 있는 개인 및 집단의 능동적이고 자유로우며 효과적이고 유의미하며 사전에 정보를 전달 받은 상태에서의 참여를 보장하여,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전 그 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농민 농촌노동자과 관계를 맺고 이들의 지지를 받으며, 이들의 의견에 응하여, 농민 농촌노동 자의 자체적인 대표기구를 통해 농민 농촌노동자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협력해야 한다.

4. 국가는 각국의 농민 농촌노동자에 적용할 수 있는 인권 의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참여 하고 있는 관련 국제 협정 및 기준들을 다듬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

5. 국가는 국가 규제 대상이 되는 개인과 민간단체, 초국적 기업과 기타 사업체 같은 비국 가 행위자들이 농민 농촌노동자의 권리 향유를 무효화 하거나 손상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 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국가는 본 선언문의 목적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지원하는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국가 간, 관련 국제 및 지역 단체, 그리고 특히 농민 농촌노동자 단체를 비롯한 시민 사회와 적절히 협력하여 국제 협력과 관련하여 적합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a) 국제 개발 프로그램을 비롯한 관련 국제협력이 농민 농촌노동자에게 포괄적이고 접근가 능하며 관련이 있도록 보장하는 것

(b) 정보, 경험, 훈련 프로그램 및 모범 사례의 교환 및 공유 포함하여 역량 강화를 촉진하 고 지원하는 것

(c) 과학 및 기술 지식 연구와 접근에 있어 협력을 촉진하는 것

(d) 특히 개발도상국에게 상호 합의된 조건으로 기술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기술 및 경제적 원조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접근 가능한 기술에 대한 접근과 공유를 촉진하는 것

(e) 극단적인 식량 가격 변동과 투기 유인 요소를 제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적 수 준에서 시장 기능을 개선하고, 식량 비축을 포함하여 시장정보에 대한 적시의 접근을 촉진하 는 것

제3조

1. 농민 농촌노동자는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기타 모든 국제 인권법에 인정된 모 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누릴 권리를 가지며,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혈통, 성 별, 언어, 혼인 여부, 재산, 장애, 나이, 정치적 또는 다른 견해, 종교, 출생 또는 경제적, 사회적, 기타 지위로 인해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 다.

 농민 농촌노동자는 그들의 발전권을 행사하기 위한 우선순위 및 전략을 결정하고 발전시 킬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복합적이고 교차적인 형태의 차별을 포함하여 농민 농촌노동자들의 지속적인 차별을 유발하거나 이에 기여하는 상황을 근절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취해야 한다.

제4조

 국가는 여성 농민 농촌노동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근절시키고 그들의 역량 강화 를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동원해야 하며, 이를 통해 남녀평등의 원칙에 근거해, 여성 농민 농촌노동자가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누리며, 농촌의 경제적·사회 적·문화적 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하고 참가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2. 국가는 여성 농민 농촌노동자가 본 선언문과 다른 국제 인권법에서 제시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는 다음의 권리를 포함한다.

(a) 모든 단계의 발전계획 수립과 실행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권리

(b) 적절한 보건 시설, 가족계획과 관련한 정보·진료·서비스를 포함하는 달성 가능한 최 대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수준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

(c) 사회 보장 프로그램으로부터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권리

(d) 문맹과 관련한 교육 훈련을 포함하는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모든 종류의 교육과 훈련을 받고, 기술적 숙련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공동체 및 농촌 지도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을 권리

(e) 고용과 자영업을 통한 경제적 기회에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조단체와 협동 조합을 조직할 권리

(f) 모든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권리

(g) 금융서비스, 농업 신용과 대출, 판매시설, 적절한 기술에 접근할 동등한 권리

(h) 토지와 천연자원에 동등하게 접근 사용 관리하며 토지 및 농지개혁과 토지 재정착 계획 에 있어서 동등하거나 우선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

(i) 제대로 된 고용, 동등한 보수와 사회적 혜택을 받으며, 소득 창출 활동에 접근할 권리

(j)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5조

농민 농촌노동자는 본 선언문 제 28조에 따라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그
등 공동체의 천연자원에 접근하고 이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 이들은 또
- 74 -

한 자원관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농민 농촌노동자가 전통적으로 보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천연자원의 개발이 다음의 경우를 근거로 허용되도록, 하지만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 조처를 해야 한다.

(a) 적절한 절차에 따라 사회 환경 영향평가를 수행한 경우

(b) 본 선언문 2조3항에 부합하여, 성실하게 협의한 경우

(c) 개발로 인한 혜택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려는 방안이 천연자원을 개발하는 측과 농민 농촌노동자의 상호 동의 하에 마련된 경우

제6조

1. 농민 농촌노동자는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인 온전성,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농민 농촌노동자는 무단체포·억류·고문이나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되며, 노예 또는 노역 상태에 둘 수 없다.

제7조

1. 농민 농촌노동자는 어디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2. 국가는 농민 농촌노동자의 이동의 자유를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

국가는 필요한 경우에 농민 농촌노동자에 영향을 끼치는 국경에 걸친 토지 사용권 문제
를 다루기 위한 관점에 협력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

제8조

농민 농촌노동자는 사고, 신념, 양심, 종교, 의견, 표현 및 평화집회에 대한 자유 권리
를 가진다. 이들은 로컬, 지역, 국내, 국제적 차원에서 구두, 서면, 인쇄물, 예술의 형태 또
는 이들이 선택한 다른 형식의 미디어를 통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

2. 농민 농촌노동자는 개인 및/혹은 집단으로, 다른 이와의 연합 또는 공동체서, 인권과 기 본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저항하는 평화적 행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3. 본 선언문에서 규정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명성을 존중

(b)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4. 국가는 본 선언문에서 기술하고 있는 적법한 권리 행사와 수호의 결과로서 어떠한 폭 력·위협·보복·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차별·억압 또는 기타 자의적 행위에 대하여 모든 사 람이 개별적 또는 공동으로 담당 당국에 의해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제9조

농민 농촌노동자는 조직단체, 노동조합, 협동조합, 또는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 75 -

그리고 단체교섭을 위해 스스로 선택한 기타 조직체나 연합체를 형성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 다. 이러한 조직은 성격상 독립적이고 자발적이며 어떠한 방해·강압·탄압으로부터 자유로워 야 한다.

 법률로 정해진 경우,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 건 또는 도덕의 보호,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권리 의 행사에는 어떠한 제한이 있어서도 안 된다.

3. 국가는 노동조합, 협동조합, 각종 조직을 포함하여 농민 농촌노동자가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적절한 수단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이러한 조직들과 회원들에 대한 법적이 거나 행정적인 차별을 포함하여, 이들이 단체의 설립·성장·합법적인 활동을 추구하면서 당 면하는 어려움을 없애려고 해야 하며, 조건과 가격이 공정하며 안정적이고, 존엄성·삶다운 삶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게끔 계약상의 조건을 협상하면서 자신들의 지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10조

 농민 농촌노동자는 자신들의 삶·토지·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프로그램·프 로젝트의 준비와 실행에 있어서 직접 및/혹은 자신들의 대표조직을 통해서 적극적이고 자유롭 게 참여를 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농민 농촌노동자들이 직접 및/혹은 자신들의 대표조직을 통해 자신들의 삶·토 지·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농민 농 촌노동자의 강력하고 독립적인 조직의 설립과 확장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노동·환경 기준의 준비와 실행에 그들의 참여를 장려하는 것을 포함한 다.

제11조

1. 농민 농촌노동자는 상품의 생산·가공·마케팅· 유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정보를 찾고, 받고, 발전시키고, 나눌 권리가 있다.

2. 국가는 농민 농촌노동자가 관련 있고, 투명하고, 시의적절하고, 충분한 언어 및 형태로 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 조치는 그들의 문화 적 방식에 부합하고 역량을 강화하며 그들의 삶·토지·생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의사결정에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3. 국가는 농민 농촌노동자가 지역적·국가적·국제적 수준에서 자신들의 생산물 품질에 대 한 적절하고 공정하며 공평한 평가·인증 체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그러한 체계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

1. 농민 농촌노동자는 분쟁 해결을 위한 공정한 절차에 대한 접근권, 모든 종류의 인권침해 구제수단에 대한 접근권을 포함하여 유효하고 비차별적인 사법접근권을 가진다. 국제인권법이 정하는 관련 의무규정에 따라 이러한 결정은 그들의 관습·전통·규정·법률체계를 충분히 고 려해야 한다. 2. 국가는 공정하고 권한 있는 사법 및 행정기관을 통해 당사자의 언어를 통하여 적시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비차별적인 사법접근권을 제공해야 하고, 항소·원상회복·구상·손해배상·피해복구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구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3. 농민 농촌노동자는 법적인 지원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행정적 사법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농민 농촌노동자에게 법률지원을 비롯한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한 다.

4. 국가는 본 선언문에서 기술하고 있는 권리에 더하여 관련 인권 증진과 수호를 위해 관련 국가적 제도를 강화할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5. 국가는 농민 농촌노동자의 토지·천연자원을 자의적으로 수탈하거나 생존수단 및 온전성 을 빼앗는 행위, 어떠한 형태로든 정주·이주 강요 행위 등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효과를 가진 모든 행위를 예방 및 바로잡을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해야 한다.

제13조

1. 농민 농촌노동자는 노동권을 가지며, 여기에는 생계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포함 된다.

2. 농민 농촌노동자의 아동은 위험할 수 있거나, 아동의 교육을 방해하거나, 건강, 신체적 정신적 영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해로운 그 어떠한 노동으로부터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농민 농촌노동자 그리고 그들 가족에게 충분한 생활 수준을 위한 보상이 제공되는 일의 기회가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4. 농촌 빈곤 문제가 심각하고 다른 부문의 고용기회가 없는 경우 국가는 제대로 된 고용 창출에 기여할 만큼 충분히 노동집약적인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마련하고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국가는 소규모 농업 및 영세 어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곳에서 농촌 지역 노동 감 시관의 효율적 활동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자원을 투입하여 노동법 준수 여부를 감시한다.

6. 누구도 인신매매의 희생양이 되거나 어떤 식으로든 현대적인 노예 형태의 위험 대상이 되어 강제적·구속적· 강압적 노동을 요구 받아서는 안 된다. 국가는 농민 농촌노동자 그리 고 그들의 대표조직과 협의 협력하여 경제적 착취와 여성·남성·아동들에 대한 채무구속 노 동, 어업 삼림 계절 이주 노동자에 대한 강압 노동 등, 모든 형태의 현대적인 노예노동으로부 터 그들을 보호할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

제14조

1. 농민 농촌노동자는 임시노동자 · 계절 노동자 또는 이주노동자 등, 자신의 법적 상태와는 상관없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가지며, 안전 및 건강대책의 적용 및 검토에 참여하며, 안전 및 건강위원회의 안전 및 건강 대표자를 선정하고, 위해요소를 예방 감소 관리할 방안을 실행하고, 적절하고 충분한 보호의류와 보호 장비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 고, 업무상 안전에 관한 충분한 정보와 교육을 받으며, 성적 추행을 포함한 괴롭힘과 폭력으 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서 일하고, 위험하고 건강에 해로운 노동조건을 보고하며, 자신의 안 전 및 건강이 심각한 위험에 직면했다는 합리적 확신이 들 때 작업 활동으로 인한 위험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 행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보복대상이 되지 않는다.

 농민 농촌노동자는 농약이나 농업 또는 산업 오염물질을 비롯한 유해물질이나 유독 화학 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노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3. 국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농민 농촌노동자에게 친화적이고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 경을 보장하고, 특히 책임 당국을 지정하고 분야 간 조정을 위한 구조를 만들어 직업 안전성 과 농업·농-산업·어업 등에서의 건강과 관련한 정책의 실행, 국내법집행 및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시정 대책과 적절한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농촌일터를 위한 충분하고 적절한 감시체계를 수립 지원해야 한다.

4. 국가는 다음 사항들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취해야 한다.

(a) 기술·화학물질·농업 관행으로 유발되는 위험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금지와 제한조치 를 포함한 건강과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

(b) 농업에서 사용되는 수입·분류·포장·유통·라벨· 화학품 사용과 금지·제한에 대한 특별기준을 마련하는 국내 체계 또는 관계 당국이 승인한 여타 체계

(c) 농업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생산·수입·제공·판매·이송·저장·처리하는 당사자 들은 국내 혹은 다른 방법으로 인정받은 안전 및 건강 기준을 준수하고, 사용자에게 적절한 공식 언어나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요청 시 권한을 가진 당국에도 적 절한 정보를 제공

(d) 화학물질 쓰레기·폐기물·화학제품 공병의 안전한 수집·재활용·처분을 위한 적절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안전·건강·환경에 대한 위험을 없애 거나 최소화

(e) 농촌 지역에서 흔히 사용되는 화학제품의 건강 및 환경상의 영향과 이에 대한 대안 교 육 및 공공 인식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행

제15조

1. 농민 농촌노동자는 적절한 먹거리에 대한 권리와 기아로부터 자유로울 기본적인 권리를 지닌다. 이것은 먹거리를 생산할 권리, 최상의 신체적, 정서적, 지적 발달을 누릴 가능성을 보장하는 충분한 영양 상태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2. 국가는 농민 농촌노동자에게 충분하고 적절한 먹거리에 대한 물리적 경제적 접근이 항시 가능하게 보장해야 하고, 이러한 먹거리는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면서 미래세대의 먹거리 접근 을 보호하여 지속 가능하고 공정하게 생산 및 소비되어야 하며, 개인 및/혹은 집단적인 필요 성을 반영하여 그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충만하게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3. 국가는 농촌 아동들의 영양실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하며, 이는 국가 기초보건기반을 다지는 것을 포함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쉽게 가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적용하고 영양가가 충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하며, 임신 및 수유기의 여성들에게 충분한 영 양 상태를 보장하는 기초보건기반 또한 포함한다. 국가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특히 부모와 아이들이, 정보를 받고 영양교육 혜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소아 영양에 대한 기본 지식과 모유 수유의 장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장해야 한다. 4. 농민 농촌노동자는 그들의 먹거리와 농업체계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많은 국가 와 지역 단위에서 먹거리 주권에 대한 권리로서 인정된다. 이러한 권리는 먹거리 및 농업 정 책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포함하며,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그들의 문화적 가치를 존중 하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적절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권리도 포함한다.

5. 국가는 본 선언문이 담고 있는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적절한 먹거리에 대한 권리, 먹거리 보장과 먹거리 주권,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먹거리 체계를 진전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로컬,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수준에서 농민 농촌노동자와 함께 협력하여 공공정책을 수립해 야 한다. 국가는 농업, 경제, 사회, 문화, 발전에 대한 정책들이 본 선언문에 담긴 권리의 실 현과 일관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16조

1. 농민 농촌노동자는 자신과 가족들의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와 이를 얻는 데 필요 한 접근 가능한 생산수단·기술지원·신용·보험·금융서비스를 포함한 생산수단에 대한 권리 를 가진다. 이들은 개인 및/혹은 집단으로, 다른 이와의 연합 또는 공동체로서, 농업·어업· 가축사육의 전통적인 방식에 자유롭게 관여하고 공동체 기반의 상업화 체계를 발전시킬 권리 를 지닌다.

2. 국가는 농민 농촌노동자가 로컬·국내·지역시장에서 적절한 수입과 생계를 보장하는 가 격에 자신들의 상품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운송수단과 가공·건조·저장 시설에 대해 접근이 용이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국가는 적절한 수단을 취해 로컬·국내·지역시장(들)을 강화하고 지원해야 하고, 농민 농촌노동자이 이러한 시장(들)에 완전하고 공평하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 며, 이를 통해 자신을 비롯한 가족들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달성하게 하는 가격으로 그들의 생 산품을 팔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국가는 농촌발전, 농업·환경·무역·투자정책사업이 지역경제를 효과적으로 보호·강화 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는 기회가 되는대로 농생태적 유기농 생산을 포함하는 지속가능한 생산을 독려하고 농민-소비자 직거래를 촉진해야 한다.

5. 국가는 적절한 수단을 취해서 자연재해와 시장실패와 같은 심각한 혼란으로부터 농민 농 촌노동자의 회복력을 강화해야 한다.

6. 국가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동등한 노동 가치에 대해 공정한 임금과 공평한 보상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

제17조

 농민 농촌노동자는 토지·수자원·연안해역·어장·목초지·삼림을 지속가능하게 사용하고 관리하며, 충분한 생활수준을 달성하고, 안전하며 평화롭고 존엄하며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살아갈 장소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본 선언문 제28조에 따라 개인 및/혹은 집단으로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혼인상태의 변화·법적 능력의 결여·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의 결여와 같은 경 우를 포함하여, 토지에 대한 권리에 관련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제거하고 금지하기 위해 적절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국가는 다양한 모델과 체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현재로서 법적으로 보 호되지 않는 관습적인 토지 사용권을 포함하여, 토지 사용권에 대한 법적인 인정을 마련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는 적법한 토지사용권을 보호하고 농민 농촌노동자의 권리를 없애거나 침해하는 자의적 또는 불법적인 추방이 벌어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 가는 자연 공공재 및 이와 결부된 자원시스템을 공동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인정하고 보호 해야 한다.

4. 농민 농촌노동자는 자신들의 토지나 거주지, 또는 자신의 생산 활동과 적절한 생활 조건 을 누리는데 필요한 기타 천연자원으로부터 자의적이고 불법적으로 쫓겨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국내법이 국제인권 및 인도주의적 법과 일관되도록 강제이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국가는 처벌조치나 전쟁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의 적이고 불법적인 강제 추방, 농지파괴, 토지 및 기타 천연자원의 임의적인 몰수나 수탈을 금 지해야 한다.

5.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으로 토지를 빼앗긴 농민 농촌노동자는 개인 및/혹은 집단으로, 다 른 이와 연합 또는 공동체로서 가능한 한 그들이 자연재해 및/혹은 무력분쟁의 경우를 포함하 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으로 빼앗겼던 토지로 돌아가고, 그들의 활동에 사용되고 적절한 생활 수준의 영위를 위해 필요한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회복받을 권리가 있으며, 복귀가 불가 능한 경우 공정하고 공평하며 합법적인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적절한 경우 국가는 농민 농촌노동자가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리는 것을 보장하고 토지 의 사회적인 기능을 고려하면서 토지의 과도한 집중과 통제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토지 및 천 연자원에 대한 광범위하고 공정한 접근권을 촉진하기 위해서 농지개혁을 실시할 적절한 조치 를 취해야 한다. 무토지 농민, 청년, 소규모 어민, 기타 농촌 노동자들은 공공의 토지·어 장·삼림의 배분에서 우선권을 부여 받아야 한다.

7. 국가는 이들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토지와 천연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을 목표로 하는 여타 방법 중에서도 농생태적 방법을 포함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자연의 생물학적 능력 과 기타 다른 능력과 순환을 재생시키는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

제18조

농민 농촌노동자는 그들이 사용하고 관리하는 자연환경 및 토지생산력과 천연자원의 보
존·보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농민 농촌노동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깨끗하며 건강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 도록 보장하는 적절한 수단을 취해야 한다.

3. 국가는 기후변화 문제해결을 위한 각국의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농민 농촌노동 자는 전통적인 지식과 농법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내적·지역적 차원의 기후변화적응 및 완화 정책을 구상·실행하여 기여할 권리가 있다.

4. 국가는 어떠한 위험 물질이나 요소 및 폐기물도 농민 농촌노동자의 토지나 영토에 저장 되거나 처분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수단을 취해야 하며, 국경을 초월하는 환경피해로 인해 그 들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5. 국가는 비국가 행위자들의 학대로부터 농민 농촌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며, 이는 그들의 권리 보호에 직간접으로 기여하는 환경법 시행에 의한 조치를 포함한다.

제19조

1. 농민 농촌노동자는 본 선언문의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종자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a) 먹거리와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들에 관한 전통지식 보전에 대한 권리

(b) 먹거리와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의 활용에서 비롯되는 이익을 공유하는 과정에 공정 하게 참여할 권리

(c) 먹거리와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 할 권리

(d) 농가가 저장한 종자나 번식 물질을 저장 · 사용 · 교환 · 판매할 권리

2. 농민 농촌노동자는 자신들이 소유한 종자와 전통 지식을 유지·관리·보존·발전시킬 권 리를 가진다.

3. 국가는 농민 농촌노동자의 종자에 대한 권리를 존중·보호·실현하는 적절한 수단을 취 해야 한다.

4. 국가는 양적·질적으로 충분한 종자를 농민들이 파종 적기에 적절한 가격에 구할 수 있 도록 보장해야 한다.

5. 국가는 농민들이 자신들의 종자나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종자에 의존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본인들이 재배하기를 원하는 작물과 품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6. 국가는 농민 종자체계를 지원하고, 농민의 종자 사용과 농생물 다양성을 촉진을 위한 적 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국가는 농업 연구 개발이 농민 농촌노동자의 요구를 반영할 것을 보장하고, 농민들의 경 험을 고려하면서 이들이 연구와 개발의 우선 사항을 정하고 수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농민 농촌노동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작물 및 종자 연구 개발에 대한 투 자가 증대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8. 국가는 종자 정책, 식물품종 보호, 기타 지적재산법, 인증체계, 종자 판매법이 농민 농 촌노동자의 권리, 필요, 현실을 존중하고 고려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20조

 국가는 그들이 관련된 국제의무를 준수하면서 농민 농촌노동자의 권리의 완전한 향유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생물다양성 고갈을 방지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 용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국가는 전통적 농경, 유목, 영림, 어로, 목축, 농생태적 체계를 포함하는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에 관한 농민 농촌노동자의 전통적 지식, 혁신, 실천을 증진하고 보호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국가는 유전자조작 유기체의 개발·처리·운송·사용·이송·유포로부터 발생하는 농민 농촌노동자의 권리 침해 위험성을 방지해야 한다.

제21조

 농민 농촌노동자는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와 위생시설에 대한 인권을 가지며, 이는 삶과 모든 인권 그리고 인간 존엄성을 완전히 누리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 권리들은 비용적으로 감 당할 수 있는 동시에 물리적인 접근 가능성을 가지고 문화나 젠더측면에서 비차별적이고 수용 가능한, 양질의 수자원 공급체계를 포함한다.

2. 농민 농촌노동자는 물의 보존·회복·지속가능한 사용을 보장받으며, 개인과 가정용, 영 농·어로·목축을 위한 물에 대한 권리와 기타 물과 관계된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그들은 물과 물 관리 시스템에 정당하게 접근할 권리와 물 공급의 임의차단이나 오염으 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갖는다.

3. 국가는 관습과 공동체에 기반을 둔 물관리 체계를 포함하여 차별 없이 물에 대한 접근권 을 존중·보호·보장해야 하고, 적절한 가격에서 개인용·가정용·생산용 수자원과 위생증진 을 보장하도록 조처를 해야 하며, 특히 농촌 여성과 여아 그리고 유목민, 플랜테이션 노동자, 이민법상 신분과 무관하게 모든 이주 노동자, 불규칙적이고 비공식적인 거주지에 살고 사람들 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계층을 배려해야 한다. 국가는 관개기술, 하수처리 재사용 기술, 집수 및 저수 기술을 포함하여, 적절하고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술을 증진시켜야 한 다.

4. 국가는 수자원의 남용과 유해물질, 특히 느리고 빠른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산업폐수 및 농축 미네랄과 화학물질에 의한 오염으로부터 산지·삼림·습지·하천·암반·호수 등 물 생 태계를 보호하고 회복 시켜야 한다.

5. 국가는 제삼자가 농민 농촌노동자의 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국 가는 수자원의 보전, 복원, 지속가능한 사용을 증진하고, 다른 용도보다도 인간의 필요를 위 해 수자원을 우선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제22조

1. 농민 농촌노동자는 사회보험을 포함하여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지닌다.

 2. 국가는 각국의 국내 상황에 따라 모든 농촌 이주 노동자의 사회보장의 권리 향유를 증진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국가는 농민 농촌노동자가 사회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지닌다는 점을 인 식하고, 국내 상황에 맞게 기초사회 보장체계로 구성된 사회 보호기반을 설립하거나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보장은 생애주기 전반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이 적어도 핵심적인 보 건 및 기초수입보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가 수준에서 필요하다고 여 겨지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4. 기초사회보장은 법으로 정해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하고, 실질적이고, 접근 가능하고,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고충 처리 및 청구 절차도 명시해야 한다. 기초사회보장시스템은 그 자체로 국내법 체계를 준수하고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제23조

1. 농민 농촌노동자는 도달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들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모든 사회·보건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농민 농촌노동자는 전통 의술을 사용하고 보전할 권리 및 건강을 위한 자신들의 관행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약용을 위한 동식물과 무기물에 접근하고 보존할 권리를 포함한 다.

3. 국가는 비차별 원칙에 기초해서 농촌 지역의 보건시설 및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취약 상태에 있는 집단에 대해서는 필수 의약품, 주요 전염병에 대한 예 방조치, 출산에 관한 보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보건 문제 등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는 주요 보건문제를 예방하고 통제하는 방법, 산모와 아이의 건강관리, 보건과 인권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다.

제24조

 농민 농촌노동자는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들은 평화롭고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안정적인 가정과 공동체를 유지할 권리를 지니며 이와 관련해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2. 농민 농촌노동자는 자신의 가정에서 강제추방, 괴롭힘, 기타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지닌다.

3. 국가는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으로 일시적으로나 영구적으로 농민 농촌노동자의 의사에 반 하여 적절한 형태의 법적 혹은 기타 보호에 대한 제공 없이, 혹은 이것들에 대한 알맞은 접근 방식을 제공하지 않고,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집과 토지로부터 그들을 추방해서는 안 된다. 추방이 불가피할 경우 국가는 물리적 피해 및 기타 손실에 대해 공평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 하거나 보장해야 한다.

제25조

1. 스스로를 특정한 농생태학적, 사회문화적인, 경제적 환경 속에 위치 짓고 있는 농민 농 촌노동자는 이에 부합하는 적절한 훈련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훈련프로그램 내용은 생산성 향상, 마케팅, 해충과 균을 다루기 위한 기술, 식량 시스템에 대한 충격, 화학물질 영향, 기 후변화, 기상에 대한 교육 등을 포함해야 하지만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다.

2. 농민 농촌노동자의 모든 자녀는 인권법률에서 다루는 모든 권리와 함께 자신들의 문화에 맞는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3. 국가는 농민 농촌노동자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보다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농민 현장학교, 참여 식물 육종, 동식물 클리닉 같은 공평하고 참여적인 농민-과학자 파트너십을 장려해야 한다.

4. 국가는 경작수준·환경을 고려하여 훈련기회·시장정보·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투자 해야 한다.

제26조

 농민 농촌노동자는 어떠한 방해나 차별 없이 자신의 문화를 누리고, 자유롭게 자신의 문 화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생활 방식, 생산방법이나 기술, 혹은 관습과 전통 과 같은 전통적인 로컬 지식을 유지·표현·통제·보호·발전시킬 권리를 가진다. 그 누구도 국제법에서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문화적 권리를 원용할 수 없다. 2. 농민 농촌노동자는 국제인권 표준에 따라서 개인 및/혹은 집단으로, 다른 이와의 연합 또는 공동체로서, 자기 지역의 관습·언어·문화·종교· 문학·예술을 표현할 권리를 가진 다.

3. 국가는 전통지식에 대해 농민 농촌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인정하고 보호하려는 조처를 해야 하며, 농민 농촌노동자들의 전통적 지식·관습·기술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 다.

제27조

 유엔시스템 내 상설전문기구·유엔 기금 및 사업을 위한 기구·정부 간 기구 및 국제 적·지역적 금융기구는 본 선언문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재원 지원을 포함한 방식으로, 그중 에서도 특히 개발원조 및 협력을 통해 공헌해야 한다. 농민 농촌노동자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 치는 사안에 이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법과 수단들을 고려해야 한다.

2. 유엔과 유엔 상설전문기구·유엔 기금 및 사업을 위한 기구·정부 간 기구 및 국제적· 지역적 금융기구는 본 선언문에 대한 존중을 고취하고 완전한 적용을 촉진하며, 그 효과를 후 속 관리한다.

제28조

 본 선언문의 그 어떤 내용도 농민 농촌노동자와 원주민이 현재 또는 미래에 획득하거나 할 권리를 축소하거나 손상시키거나 무효화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선 안 된다.

2. 본 선언문에서 표명된 권리의 행사를 통해 인권 및 기본적 자유권은 어떠한 차별도 없이 존중되어야 한다. 본 선언문에서 개진하고 있는 권리행사는 오직 국제인권 의무에 준하여 결 정되는 법에 한하여 제한사항을 둔다. 이러한 제한사항은 차별이 없어야 하고 오직 권리와 다 른 자유권에 대한 완전한 인정 및 존중을 보장하는 데 필요로 해야 하며, 정당하고 민주사회 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건에 부합하는 목적이어야 한다.

Advance edited version

Distr.: General 10 September 2018 Original: English

Human Rights Council

Draft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The Human Rights Council,

Recalling the principles proclaim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which recognize the inherent dignity and worth and the equal and inalienable rights of all members of the human family as the foundation of freedom, justice and peace in the world,

Taking into account the principles proclaim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relevant convention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nd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that have been adopted at the universal or regional level,

Reaffirming the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and that the right to development is an inalienable human right by virtue of which every human person and all peoples are entitled to participate in, contribute to and enjoy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development, in which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can be fully realized,

Reaffirming also 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Reaffirming further that all human rights are universal, indivisible, interrelated, interdependent and mutually reinforcing and must be treated in a fair and equal manner, on the same footing and with the same emphasis, and recalling that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one category of rights should never exempt States from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other rights,

Recognizing the special relationship and interaction between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and the land, water and nature to which they are attached and on which they depend for their livelihood,

Recognizing also the past, present and future contribution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in all regions of the world to development and to conserving and improving biodiversity, which constitute the basis of food and agricultural production throughout the world, and their contribution in ensuring the right to adequate food and food security which are fundamental to attaining the internationally agreed development goals, including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oncerned that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suffer disproportionately from poverty, hunger and malnutrition,

Concerned also that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suffer from the burdens caused by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climate change,

Concerned further about peasants ageing around the world and youth increasingly migrating to urban areas and turning their backs on agriculture owing to the lack of incentives and the drudgery of rural life, and recognizing the need to improve the economic diversification of rural areas and the creation of non-farm opportunities, especially for rural youth,

Alarmed by the increasing number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forcibly evicted or displaced every year,

Alarmed also by the high incidence of suicide of peasants in several countries,

Stressing that peasant women and other rural women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economic survival of their families and in contributing to the rural and national economy, including through their work in the non-monetized sectors of the economy, but are often denied tenure and ownership of land, equal access to land, productive resources, financial services, information, employment or social protection, and are often victims of violence and discrimination in a variety of forms and manifestations,

Stressing also the importance of promoting and protecting the rights of the child in rural areas, including through the eradication of poverty, hunger and malnutrition, the promotion of quality education and health, protection from exposure to chemicals and wastes, and the elimination of child labour, in accordance with relevant human rights obligations,

Stressing further that several factors make it difficult for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including small-scale fishers and fish workers, pastoralists, foresters and other local communities to make their voices heard, to defend their human rights and tenure rights, and to secure the sustainable use of the natural resources on which they depend,

Recognizing that access to land, water, seed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is an increasing challenge for rural people, and stressing the importance of improving access to productive resources and investment in appropriate rural development,

Convinced that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should be supported

in their efforts to promote and undertake sustainable practices of agricultural production that support and are in harmony with nature, also referred to as Mother Earth in a number of countries and regions, including by respecting the biological and natural ability of ecosystems to adapt and regenerate through natural processes and cycles,

Considering the hazardous and exploitative conditions that exist in many parts of the world under which many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have to work, often denied the opportunity to exercise their fundamental rights at work, and lacking living wages and social protection,

Concerned that individuals, groups and institutions that promote and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ose working on land and natural resources issues face a high risk of being subject to different forms of intimidation and of violations of their physical integrity,

Noting that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often face difficulties in gaining access to courts, police officers, prosecutors and lawyers to the extent that they are unable to seek immediate redress or protection from violence, abuse and exploitation,

Concerned about speculation on food products, the increasing concentration and unbalanced distribution of food systems and the uneven power relations along the value chains, which impair the enjoyment of human rights,

Reaffirming that the right to development is an inalienable human right by virtue of which every human person and all peoples are entitled to participate in, contribute to and enjoy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development, in which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can be fully realized,

Recalling the right of peoples to exercise, subject to the relevant provisions of both Intern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 full and complete sovereignty over all their natural wealth and resources,

Recognizing that the concept of food sovereignty has been used in many States and regions to designate the right to define their food and agriculture systems and the right to healthy and culturally appropriate food produced through ecologically sound and sustainable methods that respect human rights,

Realizing that the individual, having duties to other individuals and to the community to which he or she belongs, is under a responsibility to strive for the promotion and observance of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Declaration and in national law,

Reaffirming the importance of respecting the diversity of cultures and of promoting tolerance, dialogue and cooperation,

Recalling the extensive body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on labour protection and decent work,

Recalling als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Recalling further the extensive work of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 on the right to food, tenure rights, access to natural resources and other rights of peasants, in particular the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and the Organization's Voluntary Guidelines on the Responsible Governance of Tenure of Land, Fisheries and Forests in the Context of National Food Security, the Voluntary Guidelines for Securing Sustainable Small-Scale Fisheries in the Context of Food Security and Poverty Eradication and the Voluntary Guidelines to Support the Progressiv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Adequate Food in the Context of National Food Security,

Recalling the outcome of the World Conference on Agrarian Reform and Rural Development and the Peasants Charter adopted thereat, in which the need for the formulation of appropriate national strategies for agrarian reform and rural development, and their integration with overall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was emphasized,

Reaffirming that the present Declaration and relevant international agreements shall be mutually supportive with a view to enhancing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Determined to take new steps forward in the commitmen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a view to achieving substantial progress in human rights endeavours by an increased and sustained effor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olidarity,

Convinced of the need for greater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and for a coherent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exis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standards in this matter,

Solemnly adopts the following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Article 1

1. For the purposes of the present Declaration, a peasant is any person who engages or who seeks to engage alone, or in association with others or as a community, in small-scale agricultural production for subsistence and/or for the market, and who relies significantly, though not necessarily exclusively, on family or household labour and other non-monetized ways of organizing labour, and who has a special dependency on and attachment to the land.

2. The present Declaration applies to any person engaged in artisanal or small-scale

agriculture, crop planting, livestock raising, pastoralism, fishing, forestry, hunting or gathering, and handicrafts related to agriculture or a related occupation in a rural area. It also applies to dependent family members of peasants.

3. The present Declaration also applies to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working on the land, transhumant, nomadic and semi-nomadic communities, and the landless, engaged in the above-mentioned activities.

4. The present Declaration further applies to hired workers, including all migrant workers regardless of their migration status, and seasonal workers, on plantations, agricultural farms, forests and farms in aquaculture and in agro-industrial enterprises.

Article 2

1. States shall respect, protect and fulfil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They shall promptly take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other appropriate steps to achieve progressively the full realization of the rights of the present Declaration that cannot be immediately guaranteed.

2. Particular attention shall be pai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Declaration to the rights and special need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including older persons, women, youth, children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taking into account the need to address multiple forms of discrimination.

3. Without disregarding specific legislation on indigenous peoples, before adopting and implementing legislation and policies,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other decision-making processes that may affect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States shall consult and cooperate in good faith with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through their own representative institutions, engaging with and seeking the support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who could be affected by decisions before those decisions are made, and responding to their contributions, taking into consideration existing power imbalances between different parties and ensuring active, free, effective, meaningful and informed participation of individuals and groups in associated decision-making processes.

4. States shall elaborate, interpret and apply relevant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standards to which they are a party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ir human rights obligations as applicable to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5. States shall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non-State actors that they are in a position to regulate, such as private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respect and strengthe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6. State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support of national efforts for the realization of the purposes and objectives of the present

Declaration, shall take appropriate and effective measures in this regard, between and among States and, as appropriate, in partnership with relevant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ganizations and civil society, in particular organization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among others. Such measures could include:

(a) Ensuring that relevant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programmes, is inclusive, accessible and pertinent to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b) Facilitating and supporting capacity-building, including through the exchange and sharing of information, experiences, training programmes and best practices;

(c) Facilitating cooperation in research and in access to scientific and technical knowledge;

(d) Providing, as appropriate, technical and economic assistance, facilitating access to and sharing of accessible technologies, and through the transfer of technologies, particularly to developing countries, on mutually agreed terms;

(e) Improving the functioning of markets at the global level and facilitating timely access to market information, including on food reserves, in order to help to limit extreme food price volatility and the attractiveness of speculation.

Article 3

1.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have the right to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recogniz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all oth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free from any kind of discrimination in the exercise of their rights based on any grounds such as origin, nationality, race, colour, descent, sex, language, culture, marital status, property, disability, age, political or other opinion, religion, birth or economic, social or other status.

2.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have the right to determine and develop priorities and strategies to exercise their right to development.

3. States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liminate conditions that cause or help to perpetuate discrimination, including multiple and intersecting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peasants and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Article 4

1. Stat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liminate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peasant women and other women working in rural areas and to promote their empowerment in order to ensure, on the basis of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that they fully and equally enjoy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nd that they are able to freely pursue, participate in and benefit from rural economic, social, political and cultural development.

2. States shall ensure that peasant women and other women working in rural areas enjoy without discrimination all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set out in the present Declaration and in oth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including the rights:

(a) To participate equally and effectively in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development planning at all levels;

(b) To have equal access to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including adequate health-care facilities, information, counselling and services in family planning;

(c) To benefit directly from social security programmes;

(d) To receive all types of training and education, whether formal or non-formal, including training and education relating to functional literacy, and to benefit from all community and extension services in order to increase their technical proficiency;

(e) To organize self-help groups, associations and cooperatives in order to obtain equal access to economic opportunities through employment or self-employment;

(f) To participate in all community activities;

(g) To have equal access to financial services, agricultural credit and loans, marketing facilities and appropriate technology;

(h) To equal access to, use of and management of land and natural resources, and to equal or priority treatment in land and agrarian reform and in land resettlement schemes;

(i) To decent employment, equal remuneration and social protection benefits, and to have access to income-generating activities;

(j) To be free from all forms of violence.

Article 5

1.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have the right to have access to and to use in a sustainable manner the natural resources present in their communities that are required to enjoy adequate living condi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8 of the present Declaration. They also hav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management of these resources.

2. States shall take measures to ensure that any exploitation affecting the natural resources that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traditionally hold or use is permitted based on, but not limited to:

(a) A duly conducted social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 Consultations in good faith, in accordance with article 2.3 of the present Declaration;

(c) Modalities for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of such exploitation that have been established on mutually agreed terms between those exploiting the natural resources and the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Article 6

1.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have the right to life, physical and mental integrity,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2.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shall not be subjected to arbitrary arrest or detention, torture or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nd shall not be held in slavery or servitude.

Article 7

1.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have the right to recognition everywhere as persons before the law.

2. States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facilitate the freedom of movement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3. States shall, where required,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cooperate with a view to addressing transboundary tenure issues affecting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that cross international boundar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8 of the present Declaration.

Article 8

1.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have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belief, conscience, religion, opinion, expression and peaceful assembly. They have the right to express their opinion, either orally, in writing or in print, in the form of art, or through any other media of their choice, at the local, region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2.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have the right, individually and/or collectively, in association with others or as a community, to participate in peaceful activities against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3. The exercise of the rights provided for in the present article carries with it special duties and responsibilities. It may therefore be subject to certain restrictions, but these shall only be such as are provided for by law and are necessary:

(a) For respect of the rights or reputations of others;

(b)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security or of public order (ordre public), or of public health or morals.

4. States shall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protection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everyone, individually and in association with others, against any violence, threat, retaliation, de jure or de facto discrimination, pressure or any other arbitrary action as a consequence of his or her legitimate exercise and defence of the rights described in the present Declaration.

Article 9

1.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have the right to form and join organizations, trade unions, cooperatives or any other organization or association of their own choosing for the protection of their interests, and to bargain collectively. Such organizations shall be independent and voluntary in character, and remain free from all interference, coercion or repression.

2. No restrictions may be placed on the exercise of this right other than those which are prescribed by law and are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in the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or public safety, public order (ordre public), the protection of public health or morals 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3. States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ncourage the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including unions, cooperatives or other organizations, particularly with a view to eliminating obstacles to their establishment, growth and pursuit of lawful activities, including any legislative or administrative discrimination against such organizations and their members, and provide them with support to strengthen their position when negotiating contractual arrangements in order to ensure that conditions and prices are fair and stable and do not violate their rights to dignity and to a decent life.

Article 10

1.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have the right to active and free participation, directly and/or through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in the preparation and implementation of policies, programmes and projects that may affect their lives, land and livelihoods.

2. States shall promote the participation, directly and/or through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in decision-making processes that may affect their lives, land and livelihoods; this includes respecting the establishment and growth of strong and independent organization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and promoting their participation in the preparation and implementation of food safety, labour and environmental standards that may affect them.

Article 11

1.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have the right to seek, receive, develop and impart information, including information about factors that may affect the production, processing, marketing and distribution of their products.

2. States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have access to relevant, transparent, timely and adequate information in a language and form and through means adequate to their cultural methods so as to promote their empowerment and to ensure their effective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in matters that may affect their lives, land and livelihoods.

3. States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omote the acces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to a fair, impartial and appropriate system of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of the quality of their products at the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and to promote their participation in its formulation.

Article 12

1.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have the right to effective and non-discriminatory access to justice, including access to fair procedures for the resolution of disputes and to effective remedies for all infringements of their human rights. Such decisions shall give due consideration to their customs, traditions, rules and legal systems in conformity with relevant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2. States shall provide for non-discriminatory access, through impartial and competent judicial and administrative bodies, to timely, affordable and effective means of resolving disputes in the language of the persons concerned, and shall provide effective and prompt remedies, which may include a right of appeal, restitution, indemnity, compensation and reparation.

3.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have the right to legal assistance. States shall consider additional measures, including legal aid, to support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who would otherwise not have access to administrative and judicial services.

4. States shall consider measures to strengthen relevant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all human rights, including the rights described in the present Declaration.

5. States shall provide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with effective mechanisms for the prevention of and redress for any action that has the aim or effect of violating their human rights, arbitrarily dispossessing them of their land and natural resources or of depriving them of their means of subsistence and integrity, and for any form of forced sedentarization or population displacement.

Article 13

1.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have the right to work, which includes the right to choose freely the way they earn their living.

2. Children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have the right to be protected from any work that is likely to be hazardous or to interfere with the child's education, or to be harmful to a child's health or physical, mental, spiritual, moral or social development.

3. States shall create an enabling environment with opportunities for work for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and their families that provide remuneration allowing for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4. In States facing high levels of rural poverty and in the absence of employment opportunities in other sectors, States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stablish and promote sustainable food systems that are sufficiently labour-intensive to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decent employment.

5. States, taking into account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peasant agriculture and small-scale fisheries, shall monitor compliance with labour legislation by allocating, where required, appropriate resources to ensuring the effective operation of labour inspectorates in rural areas.

6. No one shall be required to perform forced, bonded or compulsory labour, be subject to the risk of becoming a victim of human trafficking or be held in any other form of contemporary slavery. States shall, in consultation and cooperation with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and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otect them from economic exploitation, child labour and all forms of contemporary slavery, such as debt bondage of women, men and children, and forced labour, including of fishers and fish workers, forest workers, or seasonal or migrant workers.

Article 14

1.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irrespective of whether they are temporary, seasonal or migrant workers, have the rights to work in safe and healthy working conditions, to participate in the application and review of safety and health measures, to select safety and health representatives and representatives in safety and health committees, to the implementation of measures to prevent, reduce and control hazards and risks, to have access to adequate and appropriate protective clothing and equipment and to adequate information and training on occupational safety, to work free from violence and harassment, including sexual harassment, to report unsafe and unhealthy working conditions, and to remove themselves from danger resulting from their work activity when they reasonably believe that there is an imminent and serious risk to their safety or health, without being subject to any work-related retaliation for exercising such rights.

2.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have the right not to use or to be exposed to hazardous substances or toxic chemicals, including agrochemicals or agricultural or industrial pollutants.

3. States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favourable safe and healthy working conditions for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and shall in

particular designate appropriate competent authorities responsible, and establish mechanisms for intersectoral coordin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and enforcement of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n agriculture, the agro-industry and fisheries, provide for corrective measures and appropriate penalties, and establish and support adequate and appropriate systems of inspection for rural workplaces.

4. States shall take all measures necessary to ensure:

(a) The prevention of risks to health and safety derived from technologies, chemicals and agricultural practices, including through their prohibition and restriction;

(b) An appropriate national system or any other system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establishing specific criteria for the importation, classification, packaging, distribution, labelling and use of chemicals used in agriculture, and for their prohibition or restriction;

(c) That those who produce, import, provide, sell, transfer, store or dispose of chemicals used in agriculture comply with national or other recognized safety and health standards, and provide adequate and appropriate information to users in the appropriate official language or languages of the country and, on request, to the competent authority;

(d) That there is a suitable system for the safe collection, recycling and disposal of chemical waste, obsolete chemicals and empty containers of chemicals so as to avoid their use for other purposes and to eliminate or minimize the risks to safety and health and to the environment;

(e)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educational and public awareness programmes on the health and environmental effects of chemicals commonly used in rural areas, and on alternatives to them.

Article 15

1.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have the right to adequate food and the fundamental right to be free from hunger. This includes the right to produce food and the right to adequate nutrition, which guarantee the possibility of enjoying the highest degree of physical, emotional and intellectual development.

2. States shall ensure that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enjoy physical and economic access at all times to sufficient and adequate food that is produced and consumed sustainably and equitably, respecting their cultures, preserving access to food for future generations, and that ensures a physically and mentally fulfilling and dignified life for them, individually and/or collectively, responding to their needs.

3. States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combat malnutrition in rural children, including within the framework of primary health care through, inter alia, the

application of readily available technology and the provision of adequate nutritious food and by ensuring that women have adequate nutrition during pregnancy and lactation. States shall also ensure that all segments of society, in particular parents and children, are informed, have access to nutritional education and are supported in the use of basic knowledge on child nutrition and the advantages of breastfeeding.

4.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have the right to determine their own food and agriculture systems, recognized by many States and regions as the right to food sovereignty. This includes the right to participate in decision-making processes on food and agriculture policy and the right to healthy and adequate food produced through ecologically sound and sustainable methods that respect their cultures.

5. States shall formulate, in partnership with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public policies at the local,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to advance and protect the right to adequate food, food security and food sovereignty and sustainable and equitable food systems that promote and protect the rights contained in the present Declaration. States shall establish mechanisms to ensure the coherence of their agricultural,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development policies with the realization of the rights contained in the present Declaration.

Article 16

1.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have the right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for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and to facilitated access to the means of production necessary to achieve them, including production tools, technical assistance, credit, insurance and other financial services. They also have the right to engage freely, individually and/or collectively, in association with others or as a community, in traditional ways of farming, fishing, livestock rearing and forestry and to develop community-based commercialization systems.

2. States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favour the acces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to the means of transportation, and processing, drying and storage facilities necessary for selling their products on local, national and regional markets at prices that guarantee them a decent income and livelihood.

3. States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strengthen and support local, national and regional markets in ways that facilitate, and ensure that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have, full and equitable access and participation in these markets to sell their products at prices that allow them and their families to attain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4. Stat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their rural development, agricultural, environmental, trade and investment policies and programmes contribute effectively to protecting and strengthening local livelihood options and to the transition to sustainable modes of agricultural production. States shall stimulate sustainable production, including agroecological and organic production, whenever

possible, and facilitate direct farmer-to-consumer sales.

5. States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strengthen the resilience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against natural disasters and other severe disruptions, such as market failures.

6. States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fair wages and equal remuneration for work of equal value,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Article 17

1. Peasants and other people living in rural areas have the right to land, individually and/or collectively, in accordance with article 28 of the present Declaration, including the right to have access to, sustainably use and manage land and the water bodies, coastal seas, fisheries, pastures and forests therein, to achieve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to have a place to live in security, peace and dignity and to develop their cultures.

2. States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remove and prohibi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relating to the right to land, including those resulting from change of marital status, lack of legal capacity or lack of access to economic resources.

3. States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ovide legal recognition for land tenure rights, including customary land tenure rights not currently protected by law, recognizing the existence of different models and systems. States shall protect legitimate tenure, and ensure that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are not arbitrarily or unlawfully evicted and that their rights are not otherwise extinguished or infringed. States shall recognize and protect the natural commons and their related systems of collective use and management.

4.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have the right to be protected against arbitrary and unlawful displacement from their land or place of habitual residence, or from other natural resources used in their activities and necessary for the enjoyment of adequate living conditions. States shall incorporate protections against displacement into domestic legislation that are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States shall prohibit arbitrary and unlawful forced eviction, the destruction of agricultural areas and the confiscation or expropriation of land and other natural resources, including as a punitive measure or as a means or method of war.

5.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who have been arbitrarily or unlawfully deprived of their lands have the right, individually and/or collectively, in association with others or as a community, to return to their land of which they were arbitrarily or unlawfully deprived, including in cases of natural disasters and/or armed conflict and to have restored their access to the natural resources used in their activities and necessary for the enjoyment of adequate living conditions, whenever possible, or to receive just, fair and lawful compensation when their return is not possible.

6. Where appropriate, States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carry out agrarian reforms in order to facilitate broad and equitable access to land and other natural resources necessary to ensure that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enjoy adequate living conditions, and to limit excessive concentration and control of land, taking into account its social function. Landless peasants, young people, small-scale fishers and other rural workers should be given priority in the allocation of public lands, fisheries and forests.

7. States shall take measures aimed at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land and other natural resources used in their production, including, among others, through agroecology, and ensure the conditions for the regeneration of biological and other natural capacities and cycles.

Article 18

1.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have the right to the conservation and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nd the productive capacity of their lands, and of the resources that they use and manage.

2. States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enjoy, without discrimination, a safe, clean and healthy environment.

3. States shall comply with their respective international obligations to combat climate change.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have the right to contribute to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national and local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mitigation policies, including through the use of practi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4. States shall take effective measures to ensure that no hazardous material, substance or waste is stored or disposed of on the land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and shall cooperate to address the threats to the enjoyment of their rights that result from transboundary environmental harm.

5. States shall protect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against abuses by non-State actors, including by enforcing environmental laws that contribute, directly or indirectly, to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peasants or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Article 19

1.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have the right to see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8 of the present Declaration, including:

(a) 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relevant to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b) The right to equitably participate in sharing the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c)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making of decisions on matters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d) The right to save, use, exchange and sell their farm-saved seed or propagating material.

2.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have the right to maintain, control, protect and develop their own seeds and traditional knowledge.

3. States shall take measures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 the right to seed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4. States shall ensure that seeds of sufficient quality and quantity are available to peasants at the most suitable time for planting, and at an affordable price.

5. States shall recognize the rights of peasants to rely either on their own seeds or on other locally available seeds of their choice, and to decide on the crops and species that they wish to grow.

6. States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support peasant seed systems, and promote the use of peasant seeds and agrobiodiversity.

7. States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agricultur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tegrates the need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and to ensure their active participation in the definition of priorities and the undertaking of research and development, taking into account their experience, and increase investment in research and the development of orphan crops and seeds that respond to the need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8. States shall ensure that seed policies, plant variety protection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laws, certification schemes and seed marketing laws respect and take into account the rights, needs and realitie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Article 20

1. States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ir relevant international obligations, to prevent the depletion and ensure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diversity in order to promote and protect the full enjoyment of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2. States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omote and protect the traditional knowledge, innovation and practice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including traditional agrarian, pastoral, forestry, fisheries, livestock and agroecological systems relevant to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diversity.

3. States shall prevent risks of violation of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arising from the development, handling, transport, use, transfer or release of any living modified organisms.

Article 21

1.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have the human rights to safe and clean drinking water and to sanitation, which are essential for the full enjoyment of life and all human rights and human dignity. These rights include water supply systems and sanitation facilities that are of good quality, affordable and physically accessible, and non-discriminatory and acceptable in cultural and gender terms.

2.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have the right to water for personal and domestic use, farming, fishing and livestock keeping and to securing other water-related livelihoods, ensuring the conservation, restoration and sustainable use of water. They have the right to equitable access to water and water management systems, and to be free from arbitrary disconnections or the contamination of water supplies.

3. States shall respect, protect and ensure access to water, including in customary and community-based water management systems, on a non-discriminatory basis, and shall take measures to guarantee affordable water for personal, domestic and productive uses, and improved sanitation, in particular for rural women and girls, and persons belonging to disadvantaged or marginalized groups, such as nomadic pastoralists, workers on plantations, all migrants regardless of their migration status, and persons living in irregular or informal settlements. States shall promote appropriate and affordable technologies, including irrigation technology, technologies for the reuse of treated wastewater, and for water collection and storage.

4. States shall protect and restore water-related ecosystems, including mountains, forests, wetlands, rivers, aquifers and lakes, from overuse and contamination by harmful substances, in particular by industrial effluent and concentrated minerals and chemicals that result in slow and fast poisoning.

5. States shall prevent third parties from impairing the enjoyment of the right to water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States shall prioritize water for human needs before other uses, promoting its conservation, restoration and sustainable use.

Article 22

1.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have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including social insurance.

2. States shall, according to their national circumstances, take appropriate steps to promote the enjoyment of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of all migrant workers in rural areas.

3. States shall recognize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to social security, including social insurance, and, in accordance with national circumstances, should establish or maintain their social protection floors comprising basic social security guarantees. The guarantees should ensure at a minimum that, over the life cycle, all in need have access to essential health care and to basic income security, which together secure effective access to goods and services defined as necessary at the national level.

4. Basic social security guarantees should be established by law. Impartial, transparent, effective, accessible and affordable grievance and appeal procedures should also be specified. Systems should be in place to enhance compliance with national legal frameworks.

Article 23

1.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have the right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They also have the right to have access, without any discrimination, to all social and health services.

2.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have the right to use and protect their traditional medicines and to maintain their health practices, including access to and conservation of their plants, animals and minerals for medicinal use.

3. States shall guarantee access to health facilities, goods and services in rural areas on a non-discriminatory basis, especially for groups in vulnerable situations, access to essential medicines, immunization against major infectious diseases, reproductive health, information concerning the main health problems affecting the community, including methods of preventing and controlling them, maternal and child health care, as well as training for health personnel, including education on health and human rights.

Article 24

1.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have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They have the right to sustain a secure home and community in which to live in peace and dignity, and the right to non-discrimination in this context.

2.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have the right to be protected against forced eviction from their home, harassment and other threats.

3. States shall not, arbitrarily or unlawfully, either temporarily or permanently, remove peasants or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against their will from the homes or land that they occupy without providing or affording access to appropriate forms of legal or other protection. When eviction is unavoidable, the State must provide or ensure fair and just compensation for any material or other losses.

Article 25

1.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have the right to adequate

training suited to the specific agroecological, sociocultural and economic environments in which they find themselves. Issues covered by training programmes should include, but not be limited to, improving productivity, marketing, and the ability to cope with pests, pathogens, system shocks, the effects of chemicals, climate change and weather-related events.

2. All children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have the right to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their culture, and with all the rights contained in human rights instruments.

3. States shall encourage equitable and participatory farmer-scientist partnerships, such as farmer field schools, participatory plant breeding, and plant and animal health clinics to respond more appropriately to the immediate and emerging challenges that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face.

4. States shall invest in providing training, market information and advisory services at the farm level.

Article 26

1.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have the right to enjoy their own culture and to pursue freely their cultural development, without interference or any form of discrimination. They also have the right to maintain, express, control, protect and develop their traditional and local knowledge, such as ways of life, methods of production or technology, or customs and tradition. No one may invoke cultural rights to infringe upon the human rights guaranteed by international law, nor to limit their scope.

2.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have the right, individually and/or collectively, in association with others or as a community, to express their local customs, languages, culture, religions, literature and art, in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3. States shall respect, and take measures to recognize and protect,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relating to their traditional knowledge, and eliminate discrimination against the traditional knowledge, practices and technologie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Article 27

1. The specialized agencies, funds and programme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and other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including international and regional financial organizations, shall contribute to the full realization of the present Declaration, including through the mobilization of, inter alia, development assistance and cooperation. Ways and means of ensuring the participation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on issues affecting them shall be considered.

2. The United Nations and its specialized agencies, funds and programmes, and other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including international and regional financial organizations, shall promote respect for and the full application of the present Declaration, and follow up on its effectiveness.

Article 28

1. Nothing in the present Declaration may be construed as diminishing, impairing or nullifying the rights that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and indigenous peoples currently have or may acquire in the future.

2.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of all, without discrimination of any kind, shall be respected in the exercise of the rights enunciated in the present Declaration. The exercise of the rights set forth in the present Declaration shall be subject only to such limitations as are determined by law and that are compliant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Any such limitations shall be non-discriminatory and necessary solely for the purpose of securing due recognition and respect for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and for meeting the just and most compelling requirements of a democratic society.

MEMO

MEMO
